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연구책임자 성상환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성상환(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김명정(서울대학교 강사)
보조연구원 배화순(서울 둔촌중학교)
이윤주(서울대학교 대학원)



머리말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중요한 사회적 담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가정에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유형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의 우선 순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이 부각 시키는 다문화라는 이미지는 이웃들의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정부와 학교의 정책 및 프로그램들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대안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맺고 있음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큰 물줄기가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가 깊이 고려하지 못한 영역에서 문제는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정주를 목적으로 한 결혼 이민과 그 자녀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인으로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다. 하지만 완전한 정주가 목적이 아닌 이주민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을 획득할 수도, 그렇다고 출신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현장 전문가들은 실제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바로 주변적 지위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비정주형 이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우리 사회에는 비정주형 이주민들이 많다. 이들은 정부통계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많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때로는 불법체류의 형태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은 대개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다문화 구성원들이다. 이 자녀들은 국제법상의 교육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교육 속으로 편입하지 못한 채 교육적 소외 계층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할수록 더욱 증대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다문화 사회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이란 정주의 목적을 지닌 이주민뿐만 아니라 드나들이 잦은 이주민들도 머무는 동안 문화적 편견과 차별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정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가 아직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교육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결과물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사업』의 결과물입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Grant 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 part of the Multicultural Family-Student Education Support Project.)

(A20-2010-B00004)

2010. 12. 30.

연구책임자 성상환

연구 내용 요약

1. 연구에 대한 개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룬지 4년이 지났으며,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실행 주체, 방법의 구체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통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지속되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개별 학교 및 다양한 배경을 지닌 다문화 주체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제도권 밖에 있는 다문화 주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는 점이 주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간에 부모를 따라 입국하거나,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의 부름으로 입국한 자녀를 말한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보다 특수한 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우선, 동반·중도 입국하는 자녀들 중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동반·중도입국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 그리고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은 F-1(방문동거)비자를 받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단지 체류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는 사실상의 사회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각종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정책 실행 및 각종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결혼이주자정의 학생과 이주노동자가정의 학생으로만 구분하였기 때문에,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법무부의 통계자료 중 국내 F-1 소지자 현황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국가별로 파악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2010년 연구 초기에 3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기에 맞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보다 정확한 통계파악을 위해서 2010년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계 사업으로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현황 파악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에 따른 결과는 2011년에 공개 될 예정이라고 함에 따라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과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조사하여, 학교의 특성, 교육과정

특성 및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을 위한 수요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모델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였다.

2. 동반·중도입국 자녀 실태 조사

1)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실태 조사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중,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조사하는 연도별 통계연보 및 통계월보를 통해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가정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보충하여 현재 다문화가정 중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가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F-1(방문동거) 비자 소지 입국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꾸준히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외국인 입국자 대비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가 높은 국가는 중국,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등이 있었다.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이는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2009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유형별, 국적별, 성별 현황 조사를 살펴본 결과,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은 전체 외국인주민의 9.7%에 해당하며, 2008년 대비 79.4%가 증가하였다. 특히 7-12세 이하가 외국인주민 자녀의 86.3% 차지하므로, 초기연령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3. 외국의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사례 조사

1) 미국

미국은 지난 2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이주민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이주민 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는 이주 청소년들에게 더욱 극심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적응, 인간관계, 언어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일선 학교에 해당 이민자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상담교사들을 임용하여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학교 상담교사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이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닌, 이들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2언어로서의 영어 특별과

정을 비롯한 생존 기술(survival skill)을 가르치며,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다양한 학교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마련하여 이주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캐나다

캐나다는 약 2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다인종 사회로, 현재 캐나다 주민의 20%는 이민자이며, 약 30%는 영국 및 프랑스계 이외의 타 민족에 해당된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다문화화를 인정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다. 1971년 연방정부의 ‘문화적 다원주의’ 이념 제창에서 시작한 정부 차원의 정책은 1988년 ‘다문화주의 법’으로 완성되었다.

캐나다는 이민과 이민자의 사회 통합 관련 제반 정책을 연방정부의 이민부(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CIC)에서 실시한다. 이 곳에서는 각종 이민 정책 수립 및 집행, 외국인 출입국 관리 정책 마련, 신규 이민자 통합, 시민권 부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급 기구와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 ISAP),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 프로그램(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 LINC),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으로 구성된다.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은 정착 지원 담당자를 학교에 배치하여 신규 이민자들을 학교 및 지역 사회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SWIS 프로그램, 신규 이민자 취업을 위한 취업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신규 이민자 정보센터(New Comer Information Centre)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이민자를 위한 각종 출판물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INC)은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규 이민자 대상 무료 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언어 능력 평가를 거쳐 수준에 맞는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각종 기관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캐나다인 자원 봉사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 연습,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 교육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3) 영국

영국은 최근 폭발적인 이민을 다소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일단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영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각종 다문화교육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선 이민자를 위한 언어 교육으로 이주 청소년 대상 언어 교육(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 EAL)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EAL은 만1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영어 특별 강좌로, 집중적으로 영어를 익히면서, 영어 레벨에 따라 기타 교과목도 함께 공부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Skills for Life’

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문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부모의 문해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더불어 자녀의 제반 능력도 함께 향상시킨다.

이 외에도 이민자 정착 및 적응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New Link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약 7%정도가 이민자로, 이민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기존의 프랑스 이민자 정책은 ‘통합’을 강조하였으나, 2005년 무슬림 소요 사태 이후 이러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이민 통합법안’을 시행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하여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이민자 업무는 각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일단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에서 프랑스어 수준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된다. 이민자의 프랑스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최대 400시간의 언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언어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신규 입국 외국인에 대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프랑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우선지역(ZEP) 설정을 통하여, 특히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5) 일본

일본은 최근 10년간 다문화 구성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공생에 대한 담론이 퍼지고 있다. 아직 일본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사회 통합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는 다문화공생을 위한 각종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의 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도 일본어 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도쿄의 일본어 자원봉사 네트워크(TNVN)가 있다.

이민자들의 정착 및 적응을 위하여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행정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민을 위한 웹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6) 호주

호주 역시 세계적 다문화 국가로, 2006년 기준 전체 인구 중 43%는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차원의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ESL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입국한지 6개월 이내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브리즈번 주에서 실시하는 VORTCS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여 난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TAFE 언어 코스에서도 다양한 언어 교육을 제공한다.

이민자 정착 및 적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IHSS라는 인도주의적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신규 이주민 청소년 대상 각종 지원 서비스, 무슬림 청소년 고용 증진 프로젝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신규 이주민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7) 시사점

각 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우선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다문화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달랐으나, 다문화 교육 사업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뒤따르고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이민자, 입국자들이 초기에 접할 수 있는 각종 책자를 발간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구성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참고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언어 지원 및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국내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사례

국내에 동반·중도 입국 자녀들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몇몇 대안 학교에서만 이들을 위한 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몽골학교, 아시아공동체학교, 새날학교, 원일초등학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재한몽골학교

재한몽골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 학교로, 부모와 함께 한국어로 건너오거나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재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동반·중도입국 자녀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몽골의 교

육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학업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영어, 과학, 컴퓨터를 주요 교과로 하고 있다.

재한몽골학교는 시설, 재정적 측면에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아시아공동체학교

아시아공동체학교는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생태교육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대안 학교이다. 2006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50명의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아시아공동체학교를 거쳐 갔다. 현재는 초등학교 1-6학년 과정과 디딤돌반(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한 다문화 아동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와 결혼이주자 자녀를 각각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지교과, 외국어교과, 예체능교과, 감성교과, 미디어정보교과(영상제작), 동아리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¹⁾

3) 새날학교

새날학교는 초·중고 통합형 대안학교로 매년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새날학교 입학 대상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양된 한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유학생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선교사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곳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육수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재량활동을 활용하여 모국어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다. 새날학교를 거쳐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중 대부분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새날학교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볼 때, 일반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원일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는 해외노동이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 몽골, 미국, 스리랑카,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에서 온 외국

1) 주지교과는 한국어, 수학, 생활과학, 역사과목(한국사, 세계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어교과는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선정하여 학습하고 있다. 예체능교과는 음악-바이올린, 첼로, 오카리나, 피아노 등의 악기연주와 성악을 배우며, 체육활동으로는 탁구와 볼링, 수영, 미술은 공예와 회화수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감성교과는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도보학습과 명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인 근로자 자녀들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곳에서는 크게 네 가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의사소통중심 어휘지도, 안내장을 통한 활동 준비 지도, 문화교실수업 운영,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그 예이다.

5) 무지개청소년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는 2006년 설립하여, 다문화 청소년 정착 지원 및 청소년 다문화 역량개발선도, 청소년 정책 자문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국초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길잡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 교우 관계 및 자아정체감 프로그램,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총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편입학지도, 진로교육을 제시할 수 있고, 입국 초기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다문화교육 수요 분석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우선 이들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아직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통계 자료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거점학교 지정 및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학년제’나 체계화된 이중언어교육, 예·체능통합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가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우선 안정적으로 가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반·중도입국자녀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반·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아직 이들이 다니는 많은 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II. 동반·중도입국 자녀 실태조사	5
1. 2008년 이전 현황	8
2. 2009, 2010년 현황	10
III. 외국의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사례 조사	22
1. 미국	22
2. 캐나다	34
3. 영국	42
4. 프랑스	46
5. 일본	50
6. 호주	56
7. 시사점	61
IV. 국내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사례 및 수요분석	64
1. 재한몽골학교	64
2. 아시아공동체학교	66
3. 새날학교	69
4. 원일초등학교	74
5. 무지개청소년센터	77
6.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다문화교육 수요 분석	79
7. 동반·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모델 제시	85

V. 결론	88
1. 연구결과 요약	89
2. 제언	90
참고문헌	94

표 차례

<표 II-1> F-1(방문동거)비자 발급 대상자	5
<표 II-2>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혼인 유형	7
<표 II-3> 입국자 순위별(2008년 기준)국가 현황	8
<표 II-4>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9
<표 II-5> 입국자 순위별 국가현황	10
<표 II-6>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12
<표 II-7>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2010년 4월기준)	13
<표 II-9> 다문화가정자녀 국적별 현황	17
<표 II-10> 다문화가정자녀 연령별 현황	18
<표 II-11> 외국인 주민현황	21
<표 III-1> 국가별 캐나다 이민자 현황	35
<표 III-2> ISAP 예산 변화	36
<표 III-3> 프랑스어 구술 및 필기 테스트 내용	48
<표 III-4>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	51
<표 III-5> TNVN 주요 활동	53
<표 III-6> 도교 다문화공생센터 주요 사업 내용	55
<표 III-7> 2006년 인구총조사 결과 - 호주인의 인종적 정체성	57
<표 III-8> 2006년 인구총조사 결과 - 해외 출생 인구수	57
<표 IV-1> 성별, 연령별 새날학교 학생현황	70
<표 IV-2> 출신국가별 새날학교 학생현황	70
<표 IV-3> 광주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 조사 결과	71
<표 IV-4> 새날학교 초등학교 교과 시간배당	73
<표 IV-5>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안)	81
<표 IV-6>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항	83
<표 IV-7> 동반·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단계별 모델 제시	85

그림 차례

<그림 II-1>	외국인주민 현황	16
<그림 II-2>	결혼이민, 국적취득자 국가별 분포 및 외국인주민자녀 국가별 분포	17
<그림 III-1>	SWIS 프로그램 안내 책자	37
<그림 III-2>	신규 이민자 정보 센터	39
<그림 III-3>	신규 이민자 정보 센터 : 관련 강좌 개설 현황	39
<그림 III-4>	“Alone in Canada” 한국어 번역판	40
<그림 III-5>	온타리오 주 신규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이드	40
<그림 III-6>	Durham 지역의 LINC 센터	41
<그림 III-7>	아동, 학교와 가정부에서 발간한 EAL 지원 전략 책자	44
<그림 III-8>	교사를 위한 EAL 프로그램 안내 책자	44
<그림 III-9>	‘학습 여행(learning journey)’프로그램의 단계별 진행 과정	45
<그림 III-10>	웨일즈 지방의 New Link 관련 홈페이지	46
<그림 III-11>	신규 입국 이주민에 대한 처리 절차	49
<그림 III-12>	‘국립이민자환영기구’ 홈페이지	50
<그림 III-13>	총무성의 다문화공생 프로그램	51
<그림 III-14>	도쿄 일본어 자원봉사 네트워크(TNVN) 홈페이지	53
<그림 III-15>	‘도쿄’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	55
<그림 III-16>	VORTCS 프로그램 홈페이지	59
<그림 III-17>	호주 이민국 홈페이지	60
<그림 III-18>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에 대한 신규 이민자/난민 대상 책자	61
<그림 IV-1>	아시아공동체 학교	67
<그림 IV-2>	새날학교의 현황	71
<그림 IV-3>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7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교육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기 시작한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정책적 흐름을 연차별로 일별하면, 첫 해에는 다문화교육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년차 연구가 밝혀낸 사실은 그 동안 정책의 관심영역 밖에 있었던 다문화교육이 이미 현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는 점이며 학교와 NGO, 지자체 모두 뚜렷한 정책적 목표나 프로그램이 없이 대중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다문화 구성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던 NGO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고, 지자체는 뚜렷한 교육적 목표에 기초한 정책보다는 일회적이고 전시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학교는 다문화교육의 일차적인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의 부재로 인하여 이 문제를 다룰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영역의 경계를 뚜렷이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이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 2년차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보건, 인권, 교육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져 뚜렷한 정책 주체를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문화교육정책이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간에 중복적으로 다루어져 정책적 혼선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했던 것이다. 2년차에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회 각 영역에 산재해 있던 다문화교육 관련 논의들을 수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지역별 핵심연구센터들을 통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의 다문화교육을 전달할 인력 양성(핵심교원 양성), 외국의 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 현장에 적용하였다.

3년차에 들어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다문화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실효성이 높은 다문화교육 교원 양성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확산되었고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실행 노력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3년간 수행되었던 다양한 정책들은 다문화교육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실행 주체, 방법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고 강한 정책적 추진력을 걸어줌으로써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강한 실행 의지와 지원은 중앙과 지역의 센터들의 연구를 촉진시켰으며 관련 학계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다문화교육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 못지않게 몇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적 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들이라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들을 지적할 수 있다. 중앙정책은 특수한 영역의 이해관심을 반영하기보다는 전국 수준의 일반적 문제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문제는 개별 학교의 특성,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 큰 편차를 드러낸다. 예컨대, 어떤 지역은 다문화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 지역사회 전체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다. 어떤 지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전혀 없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 언어구사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다문화가정 학생은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들어와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른 차원의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정책 주체가 갖는 한계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접적인 정책대상은 교육청과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라는 제도 공간 외부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은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실제의 다문화교육 문제가 학교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 못지않게 학교 외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협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접근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번 4년차 과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전국 수준의 일반적 정책 대상이라기보다는 특수한 관심을 요하는 정책대상이다. 그 동안의 정책과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을 구분할 때, 결혼이주자정의 학생들과 이주노동자가정의 학생들로 구분하였다면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이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간에 부모를 따라 입국하거나,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의 부름으로 들어온 자녀들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적 문제는 결혼이주자정이거나 이주노동자가정인가 하는 간단한 이분법적 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우선, 동반·중도입국 하는 자녀들의 연령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녀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나, 10대 이후 혹은 10대 중반이후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경우 한국 사회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동반·중도입국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정 내에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인 부모가 본국에 있는 자녀를 불러오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결혼 이주한 남편, 또는 아내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를 불러오는 경우에는 가족 간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셋째, 법적 지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받게 되는 F-1비자(방문동거)의 경우 체류만 허용될 뿐 사실상의 사회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입양·귀화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처한 이러한 교육적 문제들은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들이 전국 수준의 일반적인 문제들과 학교에 초점을 둔 다문화교육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역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증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는 4년차에 접어든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한 발 나아가 질적 심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실태 파악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초창기 다문화정책 연구가 수행했던 과제들과 큰 차별이 없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의 조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국내 외국인 현황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에 비해 훨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통계 조사에 포착되지 않는 다문화구성원들의 상당수에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입국할 경우 F-1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만, 불법 체류하는 경우까지 파악하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상 실태 파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할 것이다. 다만 실태조사의 한계를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에는 불법체류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간 연계활동을 통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교육 정책 제안의 측면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기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지는 않

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와 문화적응의 문제일 것이며, 나아가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와 관련한 문제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가정적·사회적 배경 변인 때문에 실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학교 재학 여부 등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특수성의 스펙트럼 속에서 각각에 적합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연구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크게 두 파트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파트는 법무부의 통계자료를 통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실태 조사이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의 F-1소지자 현황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국가별로 파악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지를 추론한다.

두 번째 파트는 실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해외 사례의 경우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과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 등의 사례도 살펴본다. 그러나 각 국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이들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비교적 독특한 특성을 지닌 정책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다문화가 보편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화시킨 정책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외국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은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이 해당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교육이나 사회적응 프로그램, 나아가 주거복지와 생활지원 차원에서 국내 정책을 고려할 만한 점들을 찾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동반·중도입국 자녀 대상 정책에 시사 하는 바가 충분한 이유는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다름 아닌 언어교육과 사회적응, 그리고 생활복지 차원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사례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교육대상 했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학교들은 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로서 학생들의 특성, 교육과정의 특성, 그리고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비교적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학교들을 살펴봄으로써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동반·중도입국 자녀 실태 조사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동반·중도 입국 자녀의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조사하는 각 해당 연도에 맞는 통계연보와 통계월보를 통해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 수를 나타낸 자료와 연령별로 입국자수를 표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하여 현황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가 실시한 다문화가정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보충하여 현재 다문화가정 중 동반·중도 입국 자녀를 둔 가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전수조사 내용에서도 역시 재혼가정이나 동반·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계수치와 조사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이는 추후에 동반·중도 입국 자녀 현황을 위한 연구조사가 요구된다.

결혼이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나 그들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 올 때 F-1(방문동거)비자를 받게 된다. F-1(방문동거)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동거일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주한외국공관, 50만 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의 가사보조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 등이 발급받는 비자이다. 법무부 내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제시하는 F-1(방문동거) 비자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II-2> F-1(방문동거) 비자 발급 대상자

자료 : 법무부출입국사무소 (<http://www.immigration.go.kr>)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 해당자 제외)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국인 투자자로서(대표 및 임직원)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을 소지한 아래 해당자의 가사보조인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
 - 08년도 1인당 국민소득(GNI)은 2,120만원(미화19,231달러) → 국민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02-759-4450)에 문의
 - 임직원의 범위: 필수전문 인력의 범위 중 임원(EXECUTIVE) 및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단, 미화 50만 달러 미만 투자자의 경우에는 첨단정보업종으로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첨단정보업종: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한 골드카드 발급 대상인 8개 첨단기술분야(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전자상거래(IT포함), 환경 및 에너지)
- 가사보조인은 신청일 기준 만 20세-55세로 중졸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여야 하며, 초청자의 사증발급신청서 신청을 통해서만 사증발급
-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소지자로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아래 해당장의 가사보조인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 (국민총소득에 관하여는 위 참조)자로서,
 - ① 13세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해 가사보조인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나,
 - ②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사보조인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특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사보조인은 신청일 기준 만20세-55세로 중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소지자여야 하며, 초청자의 사증발급신청서 신청을 통해서만 사증발급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해외입양인
-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1세
-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 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성년인 자녀 중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이 있는 자
-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육원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취업관리제 대상 외국국적동포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와 같은 F-1(방문동거)비자는 노동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F-2(장기체류)비자와는 다르게 1년 이상의 체류만 허용될 뿐 권리는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F-1(방문동거)비자를 취득 받으면 입국과 함께 교부받는 외국인 등록증의 취업란에 ‘무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F-1(방문동거)비자를 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추방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결혼이주를 통해 동반·중도 입국 하는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 이들도 한국에 입국할 때 F-1(방문동거)비자를 받게 된다. 다음의 <표 II-2>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재혼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처남편과의 자녀의 입양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따라 동반·중도 입국 자녀들의 입국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혼인 유형

(한국보건사회연구소·보건복지부, 2010)

구분 지역	부인, 남편 모두 초혼	부인 초혼, 남편 재혼	부인 재혼, 남편 초혼	부인, 남편 모두 재혼	합계(%) (명)
전체 결혼 이민자					
전체	65.0	9.3	7.6	18.1	100.0(116,220)
동지역	61.5	8.8	8.8	20.9	100.0(83,828)
읍·면지역	74.1	10.6	4.5	10.9	100.0(32,392)
여성 결혼 이민자					
전체	65.6	9.6	7.2	17.6	100.0(107,277)
동 지역	61.9	9.1	8.4	20.6	100.0(75,742)
읍·면지역	74.5	10.8	4.2	10.6	100.0(31,535)
남성 결혼 이민자					
전체	57.6	5.9	12.7	23.8	100.0(8,943)
동지역	57.4	6.3	12.4	24.0	100.0(8,086)
읍·면지역	59.7	2.3	16.0	21.9	100.0(857)

(단위 : %, 명)

한편,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F-1(방문동거)비자 소지자의 경우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인권 단체에서는 이들에게 F-2(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로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입양을 통한 귀화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이들의 한국 사회 내에서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F-1(방문동거)비자를 소지한 입국자 현황과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다음 제시되는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 국가별 현황은 전체 입국자 순위별 국가현황을 참고하여 재정리 하였다.

1. 2008년 이전 현황

<표 II-3> 입국자 순위별(2008년 기준)국가 현황(누계, 승무원 제외)
(법무부, 2008)

연도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본	2,421,406	2,319,874	2,215,611	2,358,333
중국 ²⁾	585,569	780,239	920,250	1,015,699
한국계	33,578	65,355	181,974	225,880
미국	586,519	603,741	627,172	644,012
타이완	385,079	368,964	370,071	352,071
홍콩	157,867	134,520	131,482	150,423
타이	81,518	89,752	100,850	118,877
캐나다	79,198	85,612	90,202	95,993
호주	60,474	65,491	76,980	91,801
영국	67,761	70,192	74,760	82,093
필리핀	59,023	67,941	73,122	77,074
싱가포르	64,856	71,018	75,383	77,074
독일	64,419	65,740	71,819	76,686
베트남	35,175	41,791	55,638	72,020
러시아	61,805	62,559	65,263	68,079
말레이시아	82,068	74,467	65,872	67,326
프랑스	38,690	41,021	47,084	52,577
인도네시아	39,234	36,152	39,118	49,768
인도	34,761	37,065	41,292	43,140
몽골	24,740	32,580	39,860	43,113
뉴질랜드	16,035	17,119	20,578	23,809
우즈베키스탄	8,608	11,512	16,032	22,165
이탈리아	14,428	16,612	18,008	19,996
네덜란드	13,772	15,096	16,746	17,725
노르웨이	6,507	7,325	9,328	11,734
기타	190,336	205,210	228,607	263,737
합계	5,179,848	5,321,593	5,491,128	5,897,517

(단위 : 명)

<표 II-4>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법무부, 2009)

국적	총계	성별	합계	F1(방문동거)
2004년 총계		계(T)	4,929,517	35,637
2005년 총계		계(T)	5,179,848	74,479
2006년 총계		계(T)	5,321,593	120,190
2007년 총계		계(T)	5,491,128	61,806
일본	2,358,333	남(M)	1,170,803	429
		여(F)	1,187,530	453
중국 ²⁾	759,819	남(M)	390,424	6,341
		여(F)	369,395	6,233
한국계	255,880	남(M)	144,527	1,832
		여(F)	111,353	1,427
미국	644,012	남(M)	410,491	4,506
		여(F)	233,521	3,674
타이완	352,071	남(M)	158,086	1,087
		여(F)	193,985	916
홍콩	150,423	남(M)	65,637	4
		여(F)	84,786	27
타이	118,877	남(M)	55,494	11
		여(F)	63,383	29
캐나다	95,993	남(M)	55,819	176
		여(F)	40,174	95
호주	91,801	남(M)	54,459	108
		여(F)	37,342	80
영국	82,093	남(M)	60,380	28
		여(F)	21,713	21
필리핀	79,266	남(M)	53,779	81
		여(F)	25,487	448
싱가포르	77,074	남(M)	39,708	9
		여(F)	37,336	6
독일	76,686	남(M)	59,359	40
		여(F)	17,327	36
베트남	72,020	남(M)	40,113	66
		여(F)	31,907	118
러시아	65,341	남(M)	37,721	58
		여(F)	27,620	125
말레이시아	67,326	남(M)	34,447	9

2) 한국계 중국인 포함

프랑스	52,577	여(F)	32,879	12
		남(M)	39,501	34
인도네시아	49,768	여(F)	13,076	34
		남(M)	36,055	18
인도	43,140	여(F)	13,713	45
		남(M)	37,622	12
몽골	43,113	여(F)	5,518	15
		남(M)	23,671	69
뉴질랜드	23,809	여(F)	19,442	113
		남(M)	14,050	26
우즈베키스탄	22,165	여(F)	9,759	19
		남(M)	16,696	40
이탈리아	19,996	여(F)	5,469	52
		남(M)	15,982	12
네덜란드	17,725	여(F)	4,014	9
		남(M)	14,108	4
노르웨이	11,734	여(F)	3,617	5
		남(M)	9,768	3
		여(F)	1,966	2

(단위 : 명)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 현황만을 통해 동반·중도 입국 자녀 수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위 자료를 살펴보면 꾸준히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외국인 입국자 대비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성비를 통해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이 국가들의 여성들이 F-1(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채로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해준다.

2. 2009, 2010년 현황

<표 II -5> 입국자 순위별¹⁾ 국가현황(누계, 승무원 제외)

(법무부, 2010)

시기 국가	2009년	전년대비 (%)	시기 국가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1월	2월	3월	4월
일본	3,032,376	128.6	일본	208,990	229,892	304,391	237,763

3) 한국계 중국인 포함

중국 ⁴⁾	1,212,306	119.4	중국 ⁵⁾	133,519	132,673	96,040	134,448
한국계 중국인	271,073	105.9	한국계 중국인	14,026	23,544	39,327	22,559
미국	647,565	100.6	미국	47,597	45,336	58,346	54,156
타이완	411,591	116.9	타이완	39,205	39,008	30,616	42,822
홍콩	206,916	137.6	타이	14,020	22,662	17,422	19,557
타이	156,166	131.4	홍콩	14,612	13,685	21,475	30,149
캐나다	102,145	106.4	말레 이시아	3,490	6,416	6,981	10,486
호주	91,801	102.7	필리핀	7,201	6,646	9,190	9,861
영국	82,093	102.6	캐나다	8,407	8,167	9,216	9,809
필리핀	79,266	109.1	호주	8,201	5,729	10,790	9,091
싱가포르	77,074	109.4	영국	7,295	6,194	8,010	8,277
독일	76,686	105.0	싱가포르	4,440	4,936	6,462	7,800
베트남	72,020	106.3	베트남	4,385	7,097	8,374	7,661
러시아	68,079	95.7	독일	6,644	5,563	8,220	6,712
말레 이시아	67,326	98.3	러시아	6,233	4,462	5,450	5,826
프랑스	52,577	102.2	프랑스	4,090	3,739	4,488	5,250
인도 네시아	49,768	98.2	인도 네시아	2,867	3,084	3,290	4,048
인도	43,140	94.8	인도	3,583	3,039	3,746	4,038
몽골	43,113	88.6	몽골	3,279	3,542	3,213	2,431
뉴질랜드	23,809	96.9	뉴질랜드	2,000	1,454	1,968	2,084
우즈베키 스탄	22,165	71.7	네덜란드	1,403	1,094	1,696	1,671
이탈리아	19,996	98.0	이탈리아	1,313	1,211	1,831	1,569
네덜란드	17,725	95.3	터키	543	517	946	1,269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11,734	88.5		1,154	1,214	1,384	1,191
기타	263,737	101.6	미얀마	1,024	922	1,352	1,153
계	6,942,183	117.7	계	503,953	578,107	684,886	643,143

(단위 : 명)

<표 II-6>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법무부, 2009)

국적	총계	성별	합계	F-1(방문동거)
일본	3,032,376	남(M)	1,289,914	373
		여(F)	1,742,462	437
중국어 ⁴⁾	941,233	남(M)	454,773	8,116
		여(F)	486,460	8,356
한국계 중국인	271,073	남(M)	159,659	119
		여(F)	111,414	137
미국	647,565	남(M)	407,954	3,634
		여(F)	239,611	2,959
타이완	411,591	남(M)	171,739	1,207
		여(F)	239,852	1,139
홍콩	206,916	남(M)	83,578	9
		여(F)	123,338	28
타이	156,166	남(M)	65,815	7
		여(F)	90,351	45
캐나다	102,145	남(M)	57,486	180
		여(F)	44,659	87
호주	94,262	남(M)	54,297	74
		여(F)	39,965	59
영국	84,213	남(M)	59,434	34
		여(F)	24,779	19
필리핀	86,478	남(M)	58,357	76
		여(F)	28,121	534
싱가포르	84,351	남(M)	41,362	3
		여(F)	42,989	4
독일	80,525	남(M)	58,186	27
		여(F)	22,339	38

4) 한국계 중국인 포함

5) 한국계 중국인 포함

베트남	76,537	남(M)	39,534	89
		여(F)	37,003	147
러시아	62,112	남(M)	35,736	57
		여(F)	26,376	213
말레이시아	66,148	남(M)	32,435	5
		여(F)	33,713	9
프랑스	53,721	남(M)	38,526	22
		여(F)	15,195	36
인도네시아	48,891	남(M)	31,737	6
		여(F)	17,154	37
인도	40,877	남(M)	35,665	16
		여(F)	5,212	11
몽골	38,192	남(M)	20,123	75
		여(F)	18,069	109
뉴질랜드	23,074	남(M)	13,338	23
		여(F)	9,736	20
우즈베키스탄	15,763	남(M)	10,895	27
		여(F)	4,868	36
이탈리아	19,598	남(M)	15,547	11
		여(F)	4,051	5
네덜란드	16,885	남(M)	12,997	3
		여(F)	3,888	2
노르웨이	10,389	남(M)	8,518	1
		여(F)	1,871	1
총계	6,671,081	계(T)	6,942,183	28,981

2009년도의 경우도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 대비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가 가장 많았고,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입국자 중에서 F-1(방문동거)비자 소지 비율이 다른 국가 보다 높다. 또한 그 증가 숫자 또한 이전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혼이주여성 증가한 출신국가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증가율의 변화를 통해 동반·중도 입국 자녀의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I-7>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2010년 4월 기준 누적 인원)

(법무부, 2010)

국적	총계	성별	합계	F-1(방문동거)
----	----	----	----	-----------

6) 한국계 중국인 포함

일본	18,978	남(M)	5,632	521
		여(F)	13,346	566
중국	128,223	남(M)	54,784	2,346
		여(F)	73,439	3,394
한국계 중국인	363,122	남(M)	186,026	3,388
		여(F)	177,096	3,875
미국	32,352	남(M)	19,973	6,821
		여(F)	12,973	4,907
타이완	21,692	남(M)	11,575	403
		여(F)	10,117	373
타이	28,172	남(M)	21,594	25
		여(F)	6,578	59
홍콩	403	남(M)	149	8
		여(F)	254	17
말레이시아	1,071	남(M)	565	4
		여(F)	506	7
필리핀	39,019	남(M)	23,483	116
		여(F)	15,536	408
캐나다	7,854	남(M)	4,745	368
		여(F)	3,109	242
호주	1,801	남(M)	1,197	183
		여(F)	604	52
영국	4,034	남(M)	2,990	36
		여(F)	1,044	28
싱가포르	383	남(M)	176	8
		여(F)	207	5
베트남	87,841	남(M)	48,239	187
		여(F)	39,602	936
독일	1,453	남(M)	1,035	34
		여(F)	418	30
러시아	3,738	남(M)	1,141	137
		여(F)	2,597	375
한국계 러시아	2,290	남(M)	809	22
		여(F)	1,481	75
프랑스	2,007	남(M)	1,332	32
		여(F)	675	24
인도네시아	26,137	남(M)	23,653	9
		여(F)	2,486	21
인도	4,349	남(M)	3,075	11
		여(F)	1,274	8
몽골	21,692	남(M)	11,575	403
		여(F)	10,117	373
뉴질랜드	1,032	남(M)	694	52
		여(F)	338	42

네덜란드	259	남(M)	180	2
		여(F)	79	3
이탈리아	298	남(M)	221	7
		여(F)	77	2
터키	428	남(M)	285	1
		여(F)	143	0
우즈베키스탄	16,303	남(M)	12,167	72
		여(F)	4,136	104
미얀마	3,782	남(M)	3,525	4
		여(F)	257	16
합계	880,934	계(T)	880,934	31,315

(단위 : 명)

2010년 4월 기준 누적인원을 살펴봤을 때 다른 이전 해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계러시아인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한국계 중국인),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지원과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적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에 대한 상세한 분류를 통해 이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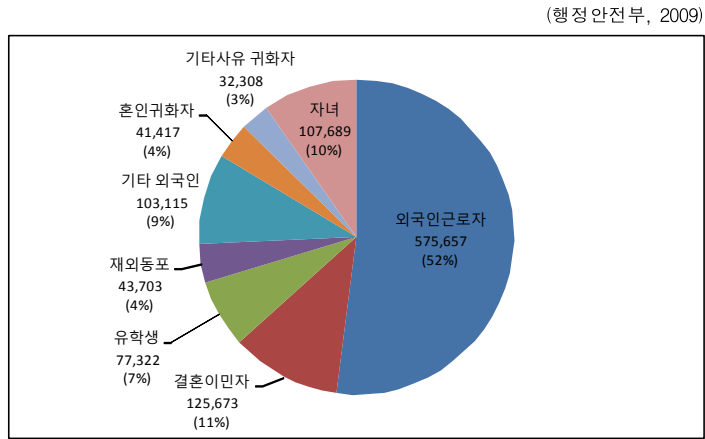
다음은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에 대한 유형별·국적별·성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 포용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일 - 5월 31일 (기준일: 2009년 5월 1일 00시)로서 조사를 위한 외국인주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II-8>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기준

(행정안전부, 2009)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90일 이상 체류자)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외국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자에 한함
- 한국국적 취득자
 -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귀화자
- 외국인주민 자녀
 -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를 국적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유형에 따라 구분)

그 결과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불법체류자 포함)은 2009년 5월 기준으로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에 해당한다. 이는 2008년 891,341명 대비 215,543명(24.2%)증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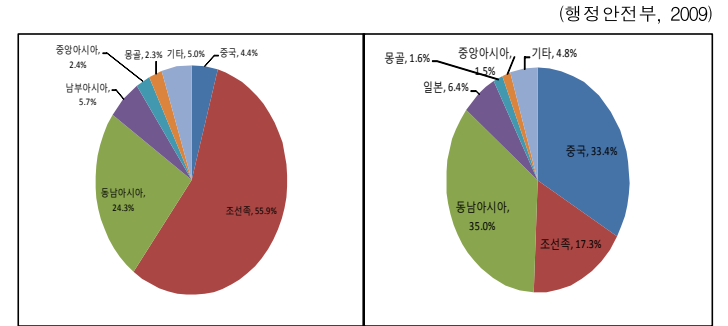


<그림 II-1>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천 명)

이 중에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926,47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3.6%에 해당하고 이는 2008년 대비 101,36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동반 · 중도입국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7%에 해당하며 이는 2008년도 대비 49,682명(85.6%)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연령에 따라 분류하면 만6세 이하가 64,040명, 만7-12세 이하가 28,922명으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86.3%를 차지한다, 이는 2008년과 대비 했을 때 41,131명(79.4%)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동반 · 중도입국자녀들의 초기연령학생들에 대한 입국초기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에 이와 같이 외국인주민자녀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녀의 수를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게 됨으로서 가능해졌다. 또한 그 이유로 살펴보면 2008년 이전 조사시에는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못하여 자녀조사가 곤란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녀 조사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은 결혼이민,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의 국가별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결혼이민, 국적취득자 자녀 ▲외국인주민 자녀
<그림 II-2> 결혼이민, 국적취득자 국가별 분포 및 외국인주민자녀 국가별 분포

<그림 II-2>를 보면, 결혼이민자 총 125,673명 중에서 중국(한국계중국인포함)54.8%, 동남아시아9.4%, 일본 2.9% 등으로 중국지역 출신이 대다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이 78.6%(58,927명)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외국인주민 자녀 총 107,689명 중에서 중국(한국계중국인포함)이 50.7%, 동남아 지역의 경우 34.9%, 일본이 6.3%, 몽골이 1.6%, 중앙아시아지역이 1.5% 순으로서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과 동남아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주민의 자녀수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남성이 51.1%, 여성이 48.9% 로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결혼이주자녀 국적별 · 연령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독립적으로 동반 · 중도입국 자녀가 분리되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 7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적별 · 연령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II-9> 다문화가정자녀 국적별 현황 (2009. 7월 기준)
(법무부, 2009)

구분	합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소계	중국	한국계중국인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모든 자국민(외국인 제외)	107,689	63,890	35,932	18,669	770	6,838	1,681	37,547	22,491	10,687	1,563	499	2,307	1,230	1,604	683	736	1,999
외국인 제외	4,205	3,713	2,300	1,257	40	87	29	277	141	111	17	3	5	59	12	40	16	88
외국인(영양인 제외)	88,485	51,059	28,500	13,945	686	6,582	1,346	32,501	19,178	9,714	1,287	404	1,918	767	1,337	576	546	1,699
외국인(영양)	14,999	9,118	5,132	3,467	44	169	306	4,769	3,172	862	259	92	384	404	255	67	174	212

<표 II-10>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 (2009.7월 기준)
(법무부, 2009)

구분	합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계	남	여	중국	한국계중국인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만 0세	8,160	4,143	4,017	3,086	1,776	856	24	271	159	4,703	3,362	674	98	23	546	58	109	37	31	136
만 1세	14,226	7,164	7,062	5,715	3,248	1,686	52	466	263	7,768	5,758	1,092	137	48	733	131	223	80	75	234
만 2세	13,059	6,730	6,329	6,044	3,291	1,963	61	490	239	6,313	4,829	1,024	165	43	252	103	223	85	73	218
만 3세	9,115	4,630	4,485	4,837	2,641	1,546	44	406	200	3,691	2,414	1,008	128	42	99	89	194	59	69	176
만 4세	7,476	3,841	3,635	4,462	2,434	1,436	38	417	137	2,501	1,350	899	144	49	59	83	167	49	66	148
만 5세	6,467	3,244	3,223	4,059	2,223	1,239	472	445	110	1,931	734	962	140	46	49	72	156	46	66	137
만 6세	5,537	2,805	2,732	3,642	1,927	1,139	49	460	67	1,494	367	921	135	36	35	66	119	41	48	127
만 7-12세	28,922	14,736	14,186	21,390	12,361	5,292	268	3,197	272	6,070	1,785	3,463	418	140	274	318	226	156	164	588
만 7세	5,300	2,690	2,610	3,636	2,026	948	57	536	69	1,369	244	931	115	31	48	56	693	29	36	105
만 8세	5,116	2,599	2,517	3,371	1,876	828	53	557	57	1,479	255	1,048	107	33	36	61	44	27	26	108

합계	107,689	63,890	52,799	63,890	35,932	18,669	770	6,838	1,681	37,547	22,491	10,687	1,563	499	2,307	1,230	1,604	683	736	1,999
만 0-6세	64,040	32,557	31,483	31,845	17,540	9,845	310	2,935	1,175	28,401	18,814	6,590	947	287	1,773	602	1,191	397	428	1,176
만 0세	8,160	4,143	4,017	3,086	1,776	856	24	271	159	4,703	3,362	674	98	23	546	58	109	37	31	136
만 1세	14,226	7,164	7,062	5,715	3,248	1,686	52	466	263	7,768	5,758	1,092	137	48	733	131	223	80	75	234
만 2세	13,059	6,730	6,329	6,044	3,291	1,963	61	490	239	6,313	4,829	1,024	165	43	252	103	223	85	73	218
만 3세	9,115	4,630	4,485	4,837	2,641	1,546	44	406	200	3,691	2,414	1,008	128	42	99	89	194	59	69	176
만 4세	7,476	3,841	3,635	4,462	2,434	1,436	38	417	137	2,501	1,350	899	144	49	59	83	167	49	66	148
만 5세	6,467	3,244	3,223	4,059	2,223	1,239	472	445	110	1,931	734	962	140	46	49	72	156	46	66	137
만 6세	5,537	2,805	2,732	3,642	1,927	1,139	49	460	67	1,494	367	921	135	36	35	66	119	41	48	127
만 7-12세	28,922	14,736	14,186	21,390	12,361	5,292	268	3,197	272	6,070	1,785	3,463	418	140	274	318	226	156	164	588
만 7세	5,300	2,690	2,610	3,636	2,026	948	57	536	69	1,369	244	931	115	31	48	56	693	29	36	105
만 8세	5,116	2,599	2,517	3,371	1,876	828	53	557	57	1,479	255	1,048	107	33	36	61	44	27	26	108

만 9세	4,906	2,519	2,387	3,673	2,078	930	35	594	36	986	315	542	53	24	52	60	30	21	26	110
만 10세	4,794	2,442	2,352	3,802	2,191	960	50	569	32	767	306	344	46	26	45	53	31	23	15	103
만 11세	4,633	2,362	2,271	3,681	2,245	859	35	502	40	726	304	316	42	18	46	44	32	24	35	91
만 12세	4,173	2,124	2,049	3,227	1,945	767	38	439	38	743	361	272	55	8	47	44	30	32	26	71
만 13 - 15세	8,082	4,187	3,895	5,864	3,438	1,757	98	458	113	1,658	975	399	101	42	141	165	100	75	83	137
만 13세	3,175	1,637	1,538	2,373	1,467	655	38	178	35	602	327	170	35	14	56	50	37	30	31	52
만 14세	2,558	1,327	1,231	1,860	1,079	588	30	128	35	509	323	115	28	9	34	60	27	22	30	50
만 15세	2,349	1,223	1,126	1,631	892	514	30	152	43	547	325	114	38	19	51	55	36	23	22	35
만 16 - 18세	6,645	3,410	3,225	4,791	2,598	1,755	94	228	121	1,418	917	255	97	30	119	145	77	55	61	98
만 16세	2,198	1,158	1,040	1,577	864	550	31	97	35	481	314	88	33	9	37	52	22	19	26	21

만 17세	2,248	1,119	1,129	1,581	820	590	36	85	50	509	328	86	36	13	46	55	29	17	17	40
만 18세	2,199	1,133	1,066	1,633	909	615	27	46	36	428	275	81	28	8	36	38	26	19	18	37

(단위 : 명)

이와 함께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교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II-11>에서 보듯이, 232개 지자체별 결혼이민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수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 전국 총 수는 125,673명이었으며, 외국인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7%에 해당('08년도 대비 49,682명 증가, 85.6%)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6세 이하가 64,040명, 만 7-12세 이하가 28,922명으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86.3%를 차지하며 이는 '08년 대비 41,131명 증가한 수치이다. '09년에 외국인주민 자녀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08년 이전 조사 시에는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못하여 자녀조사가 곤란하였으나, '09년에는 법무부 외국인 등록정보시스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녀를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1.1%(54,362명)로 여성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외국인 주민현황

(행정안전부, 2009)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수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자녀			
			국적 미 취득자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	외국인 자녀수		외국인 - 한국인 부모	
계	계	계	계	계	남	여	계	계
49,593,665	1,106,884	2.2%	125,673	41,417	54,362 (51.1%)	53,327 (48.9%)	107,689	88,485

(단위 : %, 명)

지금까지 동반·중도입국자녀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은 전국단위를 바탕으로 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라고 생각되었다. 현재까지는 동반·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논의가 깊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현황, 연령별 입국자 현황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결혼유형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파악 자료를 살펴봤을 때,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음 장에서 살펴볼 국내 동반·중도입국자녀 교육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입국 초기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동반·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신속하게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III. 외국의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사례 조사

1. 미국⁷⁾

가. 개관

미국에서 외국태생의 주민들의 숫자는 지난 2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미국이주정책연구소(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2008년 분석에 따르면 외국태생의 주민들의 수는 1990년대에 57.4%가 증가했고 지난 10년간에는 20.7%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러한 외국태생의 주민들은 합중국시민이 된 주민들과 합법적인 영주권자, 피난민들과 망명자들, 그리고 합법적인 비 이민자들(학생들과 일시적 노동인력과 방문자들을 포함한 범주)과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의 한쪽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다시 결혼해 들어옴으로 따라 들어오는 동반입국자녀들의 수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이주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나타난 외국태생의 주민들의 수치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이민자 분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이 결합하는 경우(family

7) 미국의 이민자 출신 중도입국아동들에 관한 현지자문과 문헌연구에 도움을 주신 인디애나 퍼듀대학(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Fort Wayne) 국제학 프로그램 소장인 Suin Roberts 교수에 감사한다.

reunification)와 고용보증(employment sponsorship)을 통한 입국,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경우(humanitarian case)가 있다. 2005년의 범주별 통계를 보면 가족결합의 경우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이 22%, 그리고 피난민과 망명에 속하는 부류가 13%로 나와 있다(Short, et al., 2010).

결국 먼저 들어온 외국태생인 부모의 초청이나 외국태생인 한쪽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중도귀국자녀들은 첫 번째 범주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5년에만 미국의 경우 백만 명 이상이 영주자격을 취득하였고 90만 이상의 사람들이 체류관련 분쟁조정신청을 낸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986년과 2005년 사이에 매년 평균 40만 명이 미국에 새로 도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주민들이며 2005년 현재 3천 5백 2십만 명에 이르는 합법적/비합법적 이민자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체 미국인구의 11.5%를 차지했다고 한다(Camarota, 2005).

요쿠시코, 왓슨 그리고 톰슨(Yakushko, Watson & Thompson 2008)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새로 도착하는 이민자들과 망명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의 발단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 변동적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고도로 주관적인 체험이며 동시에 많은 생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증상들을 수반한다고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지적 장애나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우울증이나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kushko, et al., 2008).

나. 이주민자녀들의 학교 적응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1) 생태적 환경: 기초적인 문제

새로운 나라에 부모 한쪽을 따라서 이주해온 학생들에 있어서 이주한 나라는 새롭고 낯선 환경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익혀야 하고 배워야 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이주 학생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 즉, 출신국가와 이주국가의 여러 가지 차이들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이한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이민 전의 교육적 배경, 이민해 온 학생 본인의 나이, 가정구성원들의 본인에 대한 지지도, 본국과 이주국가에서의 가족의 교육 배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가족의 관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다(독일의 이주노동자가족의 경우는 Roberts 2008 참조). 동반·중도 이주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생활 적응은 가정 또는 학생이 속한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학교의 상담교사들이 역량을 주도적으로 발휘하여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학생의 가정과 학생이 소속된 출신 집단의 생태학적 배경과 이주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은 학교상담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주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적 전통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해당학생의 출신소속 집단은 이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주해 온 학생이 출신소속 집단과 문화적 배경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이 학생이 이주환경과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에는 아주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우 특정한 인종에 기반을 둔 이민 집단(community)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는 기본적인 사회적 혹은 문화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모여서 거주하기 때문에 학교 상담자/교사들은 공동체/집단지원체계(community support systems)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공동체는 공적으로 지원받은 여러 다양한 지원시설과 조직들을 통해서 이주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완충기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지원한다. 때문에 이러한 조직체는 학교 상담원이나 상담교사들이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주아동들은 바깥세상과 학교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면서 가족 성원들과 소속된 공동체 성원들과의 관계가 다소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체와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던 것으로 부터 “중요”하게로 점차 단계가 변화하며 학교 상담원/상담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된다.

2) 인간관계: 상담교사, (담임)교사, 학생

이주 학생과 학교 상담교사, 그리고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그들의 학교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량' 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주 학생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해당문화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집단주의 혹은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 학생과 상담교사, 담임교사사이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특히 개인 중심적 문화를 강조하는 미국과 같은 사회 환경에의 적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교사가 학생과 교실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것은 학습 환경의 중심이 되며 새로운 학습개념과 실천영역을 형성해 준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의 교직과 이주학생을 둘러싼 구성원들과의 타협과정, 그리고 이주아동을 위한 학교의 제반 환경에 대한 개념정의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반면, 학교 상담교사들은 이주아동들과 보다 넓은 학교 문화와의 연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의 이주아동들의 행위 패턴과 학교의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이 교실과 가정이나 공동체사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학생이 수행하는 학업의 성공여부가 한 사회에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정규학습

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될 때에는 더욱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Hertzberg, 1998). 따라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생의 학습과 학교에서의 성공을 재정립해주고 해석해 주는 교사는 학생의 학교에서의 자기표현과 학업 성취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학교 상담원/상담교사들과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상담교사들 역시 일반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이주된 학생의 이주 전단계의 충격(impact of premigration)이나 또한 엄청난 외상스트레스장애(trauma)을 경험한 경우를 이해시키고 긴급한 문제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이민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촉진하여야 한다(Kaprielian-Churchill, 1996).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미국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에티오피아 여학생이 고급 동료들과 함께 자연 산책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학생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교사는 이 학생의 경험을 알 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살던 에티오피아 마을에서 사람들이 숲속에서 살해당했다는 일화 때문에 집단 산책을 거부하였던 것이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학교 상담자/상담교사들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러한 포용력을 가진 학교의 상담교사는 학교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막 새로 정착하는 국가/사회의 실생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며 이주학생들의 성공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Bemak & Chung, 2003).

또한 미국에서는 학교의 교직원과 이민 학생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직원들은 많은 이주학생의 높은 결석률이나 자퇴률을 학생의 개인적인 혹은 소속공동체나 가족에 기인하는 요인 때문이라고 본다는 것이다(Goldberg, 1999).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학교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라고 해석되어지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상담교사들은 학생과 가정, 소속공동체 그리고 교직원들 사이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민 아동들의 학교 등록과 제 2언어로서의 영어 습득문제

가) 이주 아동의 학교 등록문제

모든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료 공공교육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미국 공립학교들은 남녀공학이다. 미국은 의무교육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주(州)에서 만5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해당 지역 주(州) 교육부에 연락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州)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요구하는 연령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를 공립 혹은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모의 재택교육(home schooling)을 허용하고 있다. 사립과 달리 공립학교는 무료이며 종교교육을 하지 않는다.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은 주(州)에서 관리하지만 현직교사나 부모가 어떻게 가르칠지를 결정한다. 주민들이 지불하는 연방과 주(州)의 소득세, 지방재산세가 이 교육비를 충당하게 된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학비”라고 칭함)를 내야한다. 또한 종교단체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남녀공학인 경우도 있고, 남학생 혹은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도 있다. 몇몇 학교들은 학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미국 어린이들은 12년 동안 학교에 다니고, 아이들은 나이와 그들이 습득한 사전교육의 정도에 따라 반이 나뉘게 되며(이를 “학년”이라 칭함), 때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학년은 대개 8월이나 9월에 시작해서 5월이나 6월에 끝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한 해 내내 학교에 다니기도 한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며, 어떤 학교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서 정규시간이외에 방과 후의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주해 들어온 경우 이민자들은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다녀야 할지에 대해서 해당지역 학군(school district)의 본부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해야 하고 교직원에게 자녀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를 알려 주어야 한다.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는 데 필요한 서류들으로써 자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병원기록과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과 동일한 지역(학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 오기 전에 이민자아동이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경우 얼마동안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을 지에 관해서(한국의 동반이주 자녀에 해당될 듯) 대부분의 미국의 주(州)에서는 21세 까지 무료로 공립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때까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면 고등학교 대신에 성인교육 반에 등록하여 고등학교 학위대신 일반교육인증(GED)을 받을 수 있다. 일반교육인증 수업 과정과 장소는 각 지역학교 본부(school district) 사무실에서 확인가능하다.

나) 아동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을 테스트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정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다. 미국의 학교들은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로부터 제2 언어로서의 영어수업(ESL)이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다. 대개 이민자 학생을 위한 ESL 수업은 법으로 정해놓은 강제규정으로 각 학교장이 임의로 교과 과정에 손떨

수 없는 부분이다(예: 뉴욕주정부의 ESL 교육정책).

대개 이민자들은 자녀의 테스트, 반 배정, 그리고 학교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하여 학교에 전화로 문의해 볼 수 있고 자녀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학년에서 교육과정상 필수적인 내용들은 습득해야 한다. 이는 제2 언어로서의 영어수업이나 이중 언어교육을 통해 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상 이민자 자녀가 본국에서 다니던 학교의 학년에 맞추어 미국의 학교에 등록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의 카운슬러(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년을 낮추어 등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 2언어로서의 영어수업을 통해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 가면 능력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학교에서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도 있다. 즉 이민자 학생이 택하는 다양한 과목에 있어서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년을 낮추어 들어 갔더라도 졸업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면 월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고등학교에는 ‘인터세션(intercession)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부족한 학점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필요한 과목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맞춤’ 과목반이 있어 능력이 되는 이민자 학생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있다. 또한 이민자 학생이 본국에서 학업과정 중 이수했던 내용 중에서 특정한 과목들의 경우 미국의 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래 ESL 1이나 2등급에 있으면 자연스레 다른 과목들도 모두 ESL 수준으로 배정된다(LA 교육구에서는 ESL이 1A 1B 2A 2B 3 4등급으로 각 한 학기별로 나뉜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경우 절차를 모두 밟으면 ESL에서 3년 과정을 마쳐야만 정규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 : 중앙일보 미주판 2007년 1월 30일자 참조).

미국에서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많다. 많은 어린이와 성인들이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수업에 등록하고 있다. 이런 수업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배우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수업은 타(他)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SOL]수업, 혹은 영어능력수업[English Literacy] 이라고도 한다. 어린이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를 배우게 될 것이며 미국의 공립 학교들은 영어 학습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교육을 실시한다. 별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영어 미숙련 학생’이라고 한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은 정규 영어수업 대신에 제2언어로서의 영어 수업을 택한다. 이 보다 나은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은 정규영어 수업을 듣되,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련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돕기도 한다. 대개 이민자들의 경우 자녀의 학교 측에서 영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지원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담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민자 학생들의 배경은 다양하며 미국에 입국하기 전 본국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 기간 학

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공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성인의 경우는 성인들을 위한 공공수업(adult school)이나, 지역사회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사립 어학원에 등록할 수 있다.

종종 성인들을 위한 공공수업이나, 지역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군이나 커뮤니티 대학에 의해 각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된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자원봉사자가 강의하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수업이 제공되기도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낮 혹은 저녁시간에 있고 거주지역의 커뮤니티 대학(community college 혹은 junior college)이나 학군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을 찾는다.

대개 큰 도시들에는 낮 혹은 저녁 시간에 제2언어로서의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어학원이 있다. 강의료는 듣고자하는 강의 시간 수에 따라 책정되며 사립 어학원은 대개 공립보다 강의료가 비싸다.

몇몇 지역사회 단체, 도서관, 종교 단체 역시 무료 혹은 저가(低價)의 제2언어로서의 영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거주지의 공립도서관,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한 도서관 참고인(reference librarian)도 제2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으며, 도서관 내에서 제2언어로서의 영어 관련 책자와 테이프, CD,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

다) 아동이 장애우인 경우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무료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대개 장애아동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은 보통 반에 배정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반 수업과는 별도로 마련된 특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acf.hhs.gov/programs/add/states/ddcs.html>에서 찾을 수 있다.

4) 또래 관계

이민 학생이 새로운 문화를 접함에 있어서 학교는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 이민 학생들이 또래 아이들과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또래 관계는 학교 상담교사들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력적인 학습활동, 학업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그룹 과제, 그룹 학습 등을 조직하여 또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

전시킬 수 있다. 동시에 일반 학생들도 교육하여 서로 다른 인종 간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다. 학교상담교사의 역할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일선학교에 상담교사들이 제도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외국인민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이민자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 상담교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의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 인근에 있는 대학교등학교(University High School)의 경우 한국 이민자 학생들이 많이 등록해 있는 관계로 한국어가 유창한 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미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한인교사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학교 상담원이나 상담교사들은 아동의 부모와 담임선생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민자 아동의 학교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민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서로 다른 민족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려면 다문화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하며 역사, 사회 정치, 문화, 이민 집단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학교 상담원들은 이민 그룹의 맥락에서 다문화 상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상담원들은 리더의 역할을 하여 이민 학생들이 겪는 장애에 대응하여야 한다. 다문화상담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에게 그룹 리더쉽 기술을 개발토록 하여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책임에 가치를 두며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개 이민자 학생들의 수요는 미국 태생 학생들과 다르고 복잡하다. 이런 복합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한 학교 상담교사들은 개별과목 담당교사와 일반적인 시의 서비스 시스템사이에서 협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과 정신적인 건강, 주택, 공중위생, 청소년서비스 등을 다루는 기관들, 종교 단체, 기타 교육조직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문서화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민자 아동에 대한 예방과 조정 프로그램들의 측정된 결과가 문서화되고 보급되면 실행된 문제들과 실행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민자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학교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민자 학생들이 문화적 적응에 실패하게 하는 현상은 기존의 교육제도와 실행과정에 대해 검증하고 의의를 제기하게 한다. 학교상담교사들은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여러 단체와 조직체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민자 학생들의 요구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 학생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하여 반드시 다문화 상담에서 비롯된 제도적인 변화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한다(Bemak & Chung, 2003). 학교 상담교사들은 사회적 변화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평등한 교육을 추구하고 이민자 가족과 학생 개인의 사회적응을 촉진하여 이민이 가져오는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

라. 학교상담교사들에 대한 제안

미국의 경우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교사들에 대한 제안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들 수 있다(Pedersen & Carey, 2003 ; Ponterotto, et al., 2010)

이주학생이 학업과 연령 등 기타 사항들과 관련하여 학교의 해당 학년과 학급에 제대로 배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소수민족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보다 보충학습이나 보강 지도를 많이 받는다(remedial course). 이민 학생들 역시 성적이 낮고 언어구사 능력이 낮은 원인으로 대개 공립학교에서 덜 엄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Lucas, 1999). 학교 상담원들은 이민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 학습 방식, 언어 장애, 이민 적응 문제, 진로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학교의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민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처음의 평가 결과가 중요한 척도가 되어 언어적으로 미숙한 이민 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게 되고 교실 배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생활의 성공 여부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학생의 성공 여부는 학업 성취도, 성적, 필수적인 시험 통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이민 학생들의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학교상담원/상담교사들은 학교로 하여금 이민 학생들의 특징과 본질을 이해하게 유도해야 하며, 이민 전후의 제반 문제들이 교육에 주는 영향에 대해 학교의 스텝들에게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민 학생들의 문화적 생존과정과 이민 전에 겪게 되는 외상이나 스트레스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 기술(survival skill)을 가르친다. 상담교사들은 이민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기본 생존 기술을 가르쳐야 주어야 한다. 학교 상담원들은 앞장서서 이러한 생존 기술이 교과과정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입학생 등록 센터(Intake Centers)와 학부모를 위한 정보센터(Parent Information)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언어로 통역을 포함하여 구어, 문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군이나 학교 내 등록 센터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등록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접촉하여 교육통계나 인구구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등록과정과 절차도 도와주고 있다. 학교외의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수요가 있는 경우 학교 상담원/상담교사들은 이런 형식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학교 시스템에 도입하여야 한다(예: 버지니아 주의 Arlington Public School이 대표적인 경우임). 또한 상담교사들은 이민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과 규정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욕실과 라커이용, 학급 바꾸기, 결석에 대한 사유서 작성, 레포트 카드의 의미와 목적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자격 수업(citizenship classes)을 통하여 의식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협력적인 소그룹 학습이 필요하다. 많은 이민 학생들은 집단주의 사회 출신으로 대인관계와 상호협력에 매우 중요시한다. 협력을 필요로 하는 소그룹 학습은 이민학생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교사들에게 학교상담교사들의 경험을 소개하여 이러한 협력적인 소그룹 활동에 적용하게 한다.

학습방법을 훈련하는 것을 조력한다. 이민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이민국의 학교에 적용하고 상응한 학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새로운 학습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외 프로그램, 여름학기 프로그램, 주말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적응프로그램 또는 학업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업성취를 위해 영어 능력향상에 최우선을 둘 것이 아니라 이민자출신 학생들의 나름대로의 강점을 키워 주어야 한다. 많은 이민자출신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복원력이 강하며 이민 전 후 고도로 복잡한 혼돈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습득하였다. 학교 상담원들은 이민자출신 학생들의 이러한 능력을 찾아내어 학교와 학업에 적용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의 작은 마을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 학생들은 구어문화에 기초한 이야기를 멋지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 학교상담교사들은 일반교사들에게 수업에서 이야기풀기(storytelling)을 도입하도록 제안하여 이런 학생들의 능력이 교육제도의 구성부분이 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상담교사들은 이민자출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여 그들이 이중 언어 사용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민자출신 학생의 가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출신 학생들과 가족들이 그들의 모국 문화를 학교에 알리는 자원역할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상담교사들은 이민 학생들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하거나 교실이나 복도를 장식하게 하거나 또는 민족복장을 전시하게 하고 전통음식을 소개하게 하며 명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학교 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민 학생들이 접

축하는 첫 번째 시설이 학교라고 할 때,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이민 학생들의 학업과 장기간의 학교 적응에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상담교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문화적 위상을 세워주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이민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교실 활동에 대해 교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조력하거나, 학생, 학부모와의 면담을 진행하거나 또는 학교 전체 또는 지역사회와 연결된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전통과 실천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학교의 교직원들을 교육, 상담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민자출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려면 학교 관리인으로부터 학교장에 이르기까지의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상담원/상담교사들은 다문화주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배경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워크샵과 세미나를 조직하는 것을 통해 학교의 교직원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나 여러 사회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나 사회단체와의 협력은 이민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상담교사들은 학교와 사회단체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의미 있는 협력 관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복지시설들에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상담교사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단체나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다문화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여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촉진시켜야 한다.

가정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민가정과 양호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이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고, 학교 출석률을 보장할 수 있으며 중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민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정서발달 과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학교교육은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집단이나 인종적 배경을 가진 부모들이나 가족구성원이 학교의 교육 사안에 참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민 가정에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학부모들이 학교상담교사를 찾아 학교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정신건강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효과적이다 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 - 이민 전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이나 가족구성원을 잃게 되는 경우, 이민 후 적응의 어려움 - 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유일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민 전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이나 가족구성원을 잃게 되는 경우, 문화적 충격, 민족 정체성 혼란은 이민 학생들이 문화적 적응(accluration: 문화변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이고 또한 학교상담교사들이 해결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Bemak & Chung(2003)에 의하면 한

보스니아 중학생이 학교의 자기 책상아래에서 나오는 것을 무시위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의 정신과 의사는 이 학생이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위의 연구자들은 학생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토론주제와 다루었던 과제가 그 학생의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과 관련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약물치료가 아닌 학교 상담교사와 가까운 정신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은 뒤에 그 학생은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원주민과 이주민들을 위한 다차원적인 심리치료 모델(Multilevel Model of Psychotherapy[MLM])은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요법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민 아동을 위해 탐구와 적응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 상담교사들은 이민 학생들이 개인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학교 환경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민자출신 학생들은 학업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가르침과 보살핌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교 상담교사는 상담실을 이민학생과 관련된 사진, 모국어 문자, 아이템, 문화와 관련된 그림 등으로 장식했다. 학생이 상담실에 들어서서 이런 장식들을 보자 안전감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이민자출신 학생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자이자 옹호자로서의 상담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민 학생들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 가족, 사회단체, 제도의 층위에서 상응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상담교사들은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학교 상담교사들은 개인, 가족, 그룹 상담의 층위에서만 아니라, 차별과 불공평의 문제들을 조려하는 교육제도의 층위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상담 교사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해야한다. 많은 학교상담교사들은 이민자출신 학생들과의 상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학교 교장이나 동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때문에 이민자출신 학생들과 이민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 상담교사들은 그 결과를 평가하여 동료와 학교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상담교사가 협력학습의 개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를 통해 이민 학생의 학업수행, 참여율, 영어습득과정, 적응결과 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는 교사와 학교 시스템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이나 접근법이 효율적인지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캐나다

가. 개관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으며, 소수의 원주민과 다수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다인종 사회이다. 캐나다 주민의 20%정도는 캐나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이민자이며, 약 30%는 건국의 중심 세력이었던 영국 및 프랑스계가 아닌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약 2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 국가로, 현재 약 5백만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약 25만명의 이민자가 새로 이주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 속에서, 1971년 연방정부는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기초한 문화주의를 공식적인 사회 통합의 이념으로 제창한다. 즉,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또 1977년에 연방 의회는 '캐나다인 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여 성별, 장애, 종교와 같은 사회적 배경 때문에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법안에 명시하였다(이순태, 2007). 1982년에는 헌법의 일부로 '캐나다인의 권리와 자유 선언(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제정하였는데⁸⁾,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1988년 캐나다 의회는 '다문화주의법(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하여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 사회에서 서로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이를 고양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였다. 캐나다의 이러한 다문화주의적 입장은 '모자이크'에 비유되며, 여러 인종과 민족 집단의 조화 및 협력을 통한 공존·공생을 지향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은 오늘날 캐나다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이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민자들이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자의 인종·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유럽에서 이주하는 백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색 인종이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III-1 참조).

8) 1971년 다문화주의 선언 이후, 이를 캐나다 헌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헌법 전문 개정을 위한 논란이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1982년에 이르러서야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Section 27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Section 27은 캐나다 헌장이 캐나다인들의 다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주의가 캐나다의 헌법상 원칙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III-1> 국가별 캐나다 이민자 현황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Facts & Figures, 2008)

국가	숫자	퍼센트(%)	순위
중국	29,336	11.87	1
인도	24,549	9.93	2
필리핀	23,724	9.60	3
미국	11,216	4.54	4
영국	9,243	3.74	5
파키스탄	8,052	3.26	6
한국	7,245	2.93	7
프랑스	6,384	2.58	8
이란	6,010	2.43	9
콜롬비아	4,995	2.02	10
상위 10개국 총합	130,754	52.90	
기타	116,489	47.10	
총계	247,243	100	

이와 같이 유색 인종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규 이민자의 대부분이 대도시나 산업 밀집 지역에 집중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이민자 통합 체제와 관련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 특히 캐나다의 경우 상당수의 노동 인력을 이민자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캐나다 사회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나. 사회 통합 정책 프로그램 및 사례

캐나다의 이민, 이민자의 사회 통합 관련 제반 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곳은 연방정부의 이민부(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CIC)이다. 이 곳에서는 각종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외국인 출입국 관리 정책 마련, 연간 이민자 수의 설정 및 신규 이민자 통합, 시민권 부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민부는 연방 정부 각 부처,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국제기

9) 매년 신규 이민자의 절반 정도는 온타리오 주에 집중하여 정착하고 있다. 2007년도 신규 이민자 236,758명 중 47%는 온타리오 주, 19.1%는 퀘벡 주, 16.4%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정착하였다. 즉, 이들 3개 주에 무려 80%의 신규 이민자가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민간부문, 비영리 단체, 기타 비정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multi-jurisdictional partnership)를 구축하여 이민자 정착·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Dorais, 2002). 캐나다 헌법 상 이민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가 관할권을 공유하고 있는 분야로, 연방 이민부는 여러 주 정부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식 협정을 통하여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마니토바 주는 연방 교부금을 통해 정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불어권인 퀘벡 주는 이민자나 난민 선별 및 사회 통합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 ISAP), 둘째,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 LINC), 셋째,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이 그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목표는 신규 이민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정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민자 각자가 교육·취업 등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1)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 ISAP)¹⁰⁾

가) 개요

ISAP은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민자가 초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 입국 전 오리엔테이션, 통번역 서비스, 캐나다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안내,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방 정부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ISAP 예산 변화

ISAP 예산 (달러)	
2002/03	3,290만
2003/04	3,534만
2004/05	3,840만

10)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evaluation/isap/intro.asp?s2> (검색일 : 2010. 5. 27)

2005/06	5,370만
2006/07	1억 300만 (ELT ¹¹⁾ 를 위한 2,830만 달러 포함)
2007/08	1억 7,360만 (ELT를 위한 4,145만 달러 포함)

ISAP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이민자를 위한 경제·사회·건강·문화·교육·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은행 업무, 쇼핑,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직업 획득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¹²⁾

나) ISAT 프로그램 사례

(1) 정착 지원 담당자 학교 배치 프로그램 (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 SWIS)

이민부, 교육부, 이민자 정착 지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정착 지원 담당자(settlement workers)를 배치하여, 해당 학교 및 지역 사회에 새로 이민 온 학생과 그 가족을 신속하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학교는 신규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공공 서비스 이므로, SWIS 담당자를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신규 이민자가 학교와 해당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SWIS 프로그램은 Hamilton, Kitchener, Waterloo, Ottawa, Peel, Toronto, York Region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림 III-1> SWIS 프로그램 안내 책자
(출처 : <http://www.settlement.org/index.asp>)

- 해밀턴(Hamilton) 정착 지원 프로그램(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Hamilton)-SWISH : 연방 정부의 SWI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SWISH

11) ELT : Enhanced Language Training(고급 언어 훈련 프로그램)

12) <http://www.cic.gc.ca/english/pdf/pub/newcomer.pdf> (검색일 : 2010. 5. 27)

는 신규 이민자 학생과 그 가족이 해밀턴의 교육 체계에 원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적용하게 될 지역 사회에 대하여 신규 이민자 학생에게 알려주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SWISH는 지역 교육청, 지역 학교 이사회, 공공 도서관, 정착 및 통합 지원 센터(SISO)와 협력하여 이민자 가족을 학교와 커뮤니티에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취업 관련 서비스 (Employment-related services)¹³⁾

신규 이민자들이 정착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취업에 관련된 정보이며, 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 시장과 직접 연계해주거나, 이력서 작성, 인터뷰 방법 등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며, 구체적인 직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용어를 직접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타리오(Ontario)주 해밀턴시에서는 SISO(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s Organization)이라는 민간단체를 통하여 각종 구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 관련 멘토링 서비스
- 취업 대비용 포트폴리오 개발
- 구직 관련 워크샵
- 자격증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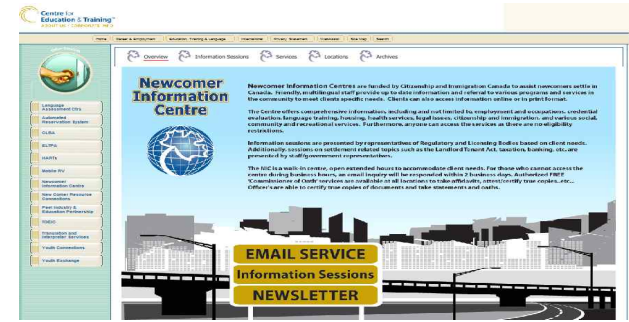
(3) 신규 이민자 정보 센터 (Newcomer Information Centre)¹⁴⁾

신규 이민자 정보 센터는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규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국 언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고용하여 신규 이민자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그림 III-3>과 같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13)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evaluation/isap/intro.asp#s2>

14) <http://www.tcet.com/nic/> (검색일자 : 2010. 5. 20)



<그림 III-2> 신규 이민자 정보 센터 (출처 : <http://www.tcet.com/nic/>)

May 2010	Location	Calendar	Download...
> Education & Training	Oakville	May 5, 2010	More details...
> Internationally Trained Engineering Technician/Technologist by OACETT	Brampton East	May 6, 2010	More details...
> Build Your Career	Markham	May 10, 2010	More details...
> Credential Evaluation by W.E.S.	Markham	May 11, 2010	More details...
> Credential Evaluation by W.E.S.	Brampton East	May 11, 2010	More details...
>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s by C.M.A.	Brampton East	May 12, 2010	More details...
> Build Your Career	Oakville	May 12, 2010	More details...
> Immigration Issues	Meadowdale Library	May 12, 2010	More details...
> Ontario College of Teachers by O.C.T.	Brampton South	May 13, 2010	More details...
> Immigration Issues	Mississauga	May 13, 2010	More details...
> Internationally Trained Engineering Technician/Technologist by OACETT	Oakville	May 13, 2010	More details...
> Build Your Career	Brampton East	May 14, 2010	More details...
> Build Your Career	Mississauga	May 17, 2010	More details...
> Women's Cafe	Markham	May 17, 2010	More details...
> Chartered General Accountant by C.G.A.	Mississauga	May 18, 2010	More det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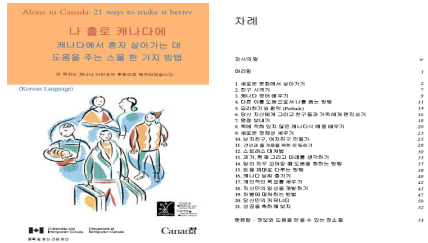
<그림 III-3> 신규 이민자 정보 센터 : 관련 강좌 개설 현황

(4)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출판물 제공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부의 재정 지원 하에 각종 출판물을 제작하고 있다. 캐나다 정신 건강 센터에서는 독신으로 살고 있는 신규 이민자들을 위하여 “Alone in Canada”라는 책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 책은 온타리오 주 정착 관련 기관(OASIS)와 캐나다 이민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영어와 프랑스 외 7개국 언어로 제작되었다. <그림 III-4>는 “Alone in Canada”의 한국어 번역판이며, 여기에는 캐나다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21가지의 내용(영어 배우기, 경제성 형성, 친구 사귀기,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방법, 생활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방 이민부는 Canadian Newcomer Magazine과 같은 신규 이민자

정보지도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종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 여가, 취업 정보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그림 II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민자가 특히 많은 온타리오 주의 경우 직접 주 정부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III-4> "Alone in Canada" 한국어 번역판



<그림 III-5> 온타리오 주 신규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이드

2)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 LINC)¹⁵⁾

LINC는 1992년부터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의 주도하에 주 정부, 교육 위원회, 지역 대학, 이민-통합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LINC를 통해서 이민자가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및 불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INC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능력을 평가 받아야 하는데 이는 LINC 평가 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는 CLB(Canadian Language

15)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welcome/wel-22e.asp> (검색일자 : 2010. 5. 17)

Benchmark)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1~12급까지 나누어 평가한다. LINC 평가 센터는 이민자의 수준에 따라서 LINC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토론토 시의 경우 YMCA가 최대 LINC 평가 센터를 운영 중이며, 해밀턴 시의 경우 SISO

에서 LINC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 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별 LINC 평가 센터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지역 이민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INC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어학 강



<그림 III-6> Durham 지역의 LINC 센터

습은 전국 각 지역의 민간단체 및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그림 III-6>는 Durham 지역의 신규 이민자를 위한 LIN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나타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아동을 위한 LINC 프로그램인 "Childminding 프로그램"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¹⁶⁾ 이 외에도 토론토 시의 경우, ESL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시민권 시험 준비 과정, 이중 언어 영어 강좌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3) 호스트 프로그램 (Host Program)

호스트 프로그램은 신규 이민자들을 위하여 캐나다인 자원봉사자가 친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가 신규 이민자의 영어 연습 상대자가 되어주거나, 커뮤니티의 인맥 형성 등을 도와주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신규 이민자에게 일대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Host Youth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이민자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캐나다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멘토링, 스포츠 활동을 위한 조직 형성, 숙제도우미 클럽 형성, 토론 동아리, 자원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호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여러 국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100여 개국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 Cultural Profiles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CD를 통해 배포하였다. 호스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영어 연습

16) <http://www.durhamlinc.ca/WhatIsLINC.htm> (검색일자 : 2010.5.10)

- 지역 사회 각종 서비스 소개
- 지역 사회에서 쇼핑 등 도우미로 활동
- 사교를 위한 도움 제공
- 교육 및 취업 관련 도움 제공

3. 영국

가. 개관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연방이주민법(The Commonwealth Immigration Act)¹⁷⁾”을 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영국 내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1976년에는 “인종관련법(The Race Relations Act)”을 제정하여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법안은 인종, 국적, 민족 등에 따라 직업, 교육, 공공 서비스 등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근거하여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를 설립하였으며, 법에 근거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2000년에 “인종관련 수정법안(Race Relations Amendment Act)”으로 수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인종 및 종교혐오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이 추가로 제정되어,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그동안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무슬림계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동구권의 유럽 연합 가입으로 인하여, 유럽 연합 가입국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십만명의 노동자가 영국으로 일시에 유입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심각한 부담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 국경 보호(Securing the UK Border)’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정책으로 외국인 방문객에 대하여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이처럼 이민법에 대한 강화를 통하여 자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이민자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이민자들이 영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7) http://en.wikipedia.org/wiki/Commonwealth_Immigrants_Acts_1962

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 및 정책 사례

영국의 경우 엄격한 선발을 통해서 제한된 사람들만을 자신들의 사회로 받아들이지만, 일단 선별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영국 사회 및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이민자를 위한 언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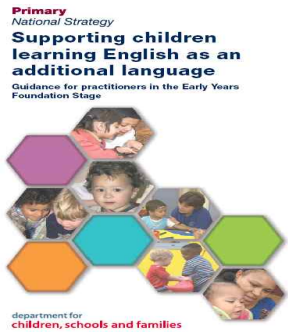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를 능숙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 생활 전반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언어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 이주 청소년 대상 언어 교육(EAL :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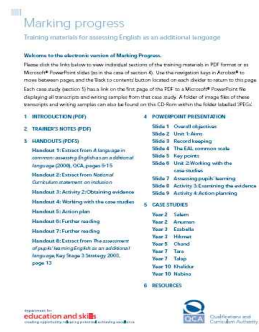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대략 80만명 정도의 학생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아동학교및가정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에서는 2003년 10월 EAL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소수 인종의 학생에 대하여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한 “Aiming High”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EAL은 만 14세까지만 입학할 허용하는 영어 특별 강좌로, 이 곳에서 집중적으로 영어를 익히면서 영어 레벨에 따라 수학, 과학, 미술 등 기타 교과목도 같이 공부하게 된다. 이주 청소년이 입국하면 곧 바로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데, 학교에 배치된 지 2주 내에 언어 능력 평가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의 영어 실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EAL 전문가로부터 학습 지원을 제공받는다. 학교 정규 수업 시작 전, 방과 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영어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들도 이주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각종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EAL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도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¹⁹⁾

18) http://www.standards.dfes.gov.uk/ethnicminorities/raising_achievement/763697/ (검색일자 : 2010.5.28)

19) <http://nationalstrategies.standards.dcsf.gov.uk/node/84861> (검색일자 : 2010.5.28)



<그림 III-7> 아동, 학교와 가정부에서 발간한 EAL 지원 전략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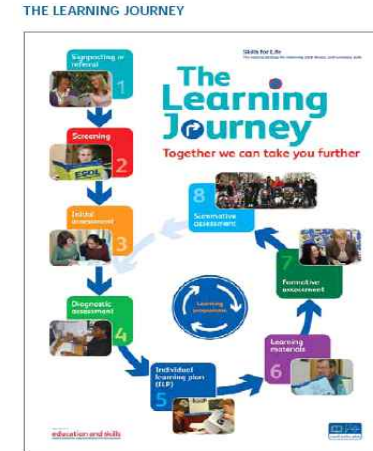


<그림 III-8> 교사를 위한 EAL 프로그램 안내 책자

나) 가족 문해 교육

영국에서는 2001년 국가 전략으로 'Skills for Life'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영국 성인들 중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문해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 문해, 언어, 수리력 프로그램(Family Literacy, language and numeracy programmes)"을 추진하였는데, 가족을 중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부모의 문해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자녀의 제반 능력까지 함께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성인 교육과 유아 교육의 요소를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 LSC)'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족 문해 및 언어, 수리력 증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 여행(learning journey)'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며, <그림 III-9>에 제시된 것과 같은 8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²⁰⁾



<그림 III-9> '학습 여행(learning journey)' 프로그램의 단계별 진행 과정

2) 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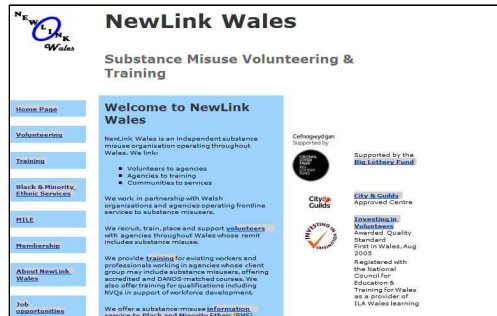
가) 학교 가정 중개 프로젝트(School Home Liaison Project)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 관계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학생의 성취를 높이고,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서비스 접근권 제공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학습 및 양육 기능을 높이고, 장난감 및 도서관 이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특히 소수 인종의 아이들에게까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실시로 가정 및 학교의 소통이 증가하였으며, 학교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인데,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학교에 소속되면서도 'The Project'라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훈련되고 감독 받는다. 이는 담당자들이 학교의 소속이면서도, 학교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도록 한다. 즉,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담당자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0) http://www.bis.gov.uk/assets/biscore/corporate/migratedD/ec_group/79-08-sk_on (검색 일자 : 2010. 5. 29)

나) New Link 프로그램

신규 이주자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영국 내부부의 'Invest to Sav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New Link'라는 윈스톱 센터를 설립하여 신규 이주자들이 개별 정보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ew Link를 통해 신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모국에서의 직업 및 노동 기술과 영국 사회가 원하는 기술 및 관련 분야에 연계해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자녀의 취학, 보건, 응급 상황 대처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다.²¹⁾



<그림 III-10> 웨일즈 지방의 New Link 관련 홈페이지

4. 프랑스

가. 개관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약 7%정도가 이민자로 그 숫자가 대략 430 만명에 달하며,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이민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인근의 후발 유럽 국가들(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의 이민이 활발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는 북아프리카, 1990년대부터는 동유럽에서의 대량 이민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특히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의 무슬림들이

21) <http://www.newlinkwales.org.uk/index.htm> (검색일자 : 2010. 5. 23)

대거 프랑스에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다. 그동안 프랑스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이었으며,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철저한 사회 통합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무슬림 소요 사태 이후 이민 정책 전반과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 정책 및 사회 통합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006년 외국인 이민 동화법으로 불리는 '이민통합법안(Projet de loi relatif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을 시행하였는데,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의 외국 이민 수용 능력 및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이민을 허용한다. 둘째, 사회 통합 차원에서 외국 이민자의 프랑스 사회로의 성공적인 동화를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가에 필요한 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프랑스 사회로의 용화 정책을 펼치면서, 불법노동력의 유입은 철저히 통제하고 검증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인 언어 및 시민 교육을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2007년 '이민·통합·국민정체성·상호발전부(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를 신설하였다.

프랑스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업무는 각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한다. '사증' 업무는 '외무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에서, '체류증' 업무는 각 지방 '경찰청(la police)'에서, '거주증' 업무는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국적(시민권)' 취득 관련 업무는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에서, 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은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에서 수행한다. '이민자 사회 통합 업무'는 '고용·사회결속·주택부'에서 담당하며, 통합 관련 각 부처 의견 조정은 '통합에 관한 각 부 공동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나. 사회 통합 정책 프로그램 및 사례

1)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

이민자 대상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연간 6천만 유로 정도)은 중앙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프랑스어 교육은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의 직원 이 개인 면담을 통해 프랑스어로 일반 지식에 대한 구술 및 필기테스트를 하면서 외국인의 프랑스어 지식수준을 평가한다. 만약 이민자의 프랑스어 구사능력이 충분하다면 '언어교육면제증명서(Attestation de Dispense de Formation Linguistique: AMDFL)'를 발급하며, 이민자의 프랑스어 구사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최대 400시간의 언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민자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은 '프랑스

어기초자격증(Diplôme Initial de Langue Française: DILF)을 발급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언어교육은 지방자치체에서 무료로 이루어지고, 교육시간과 진도는 강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다.

<표 III-3> 프랑스어 구술 및 필기 테스트 내용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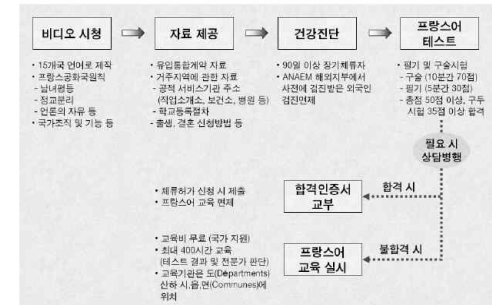
프랑스어 구술 테스트 내용		
시험	시험시간(분)	합격점수
구술 이해 - 공고(公告) 이해하기 - 간단한 고지(告知) 이해하기 - 간단한 통지서 이해하기 구술 설명 - 제기된 질문 이해하기 - 생년월일, 가격 등 제시하기 - 필요한 것 설명하기 또는 약속정하기 - 건강상태 설명하기	10	35/70
프랑스어 필기 테스트 내용		
시험	시험시간(분)	합격점수
문서 이해 - 신원확인하기 - 간단한 고지(告知) 이해하기 - 기초 정보 이해하기 - 수치 정보 이해하기 - 간단한 문건의 기능 인식하기 문서 작성 - 주소, 전화번호 쓰기 - 번호, 가격, 날짜 적기 - 양식 채우기, 간단한 메시지 남기기	10	15/30

프랑스어 관련 구술 및 필기시험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프랑스어로 얼마나 잘 표현하고 이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 입국한 이민자들 가운데 약 30% 정도가 프랑스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프랑스어 교육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2) 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

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시행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이 담당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신규 입국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프랑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입국 후 통상 3주 내에 유입 플랫폼으로 소환되어 만나질 간 교육 및 프랑스어 테스트를 받는다. 교육 및 프랑스어 테스트에 불합격한 외국인의 경우 언어 교육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 자체에 불합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허가 최초 갱신 불허, 10년 장기 체류 허가 발급 거부라는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유입통합계약’에 서명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 교육을 의무로 발도록



출처: 법무부 내부보고서.

<그림 III-11> 신규 입국 이주민에 대한 처리 절차

보여주고, ‘시민교육규정’에 기반 하여 프랑스의 여러 제도 및 양식 행동, 정·교 분리 원칙, 인권,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공화국의 가치와 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프랑스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도 1~6시간 정도 진행한다(문지영, 2009). 프랑스 정부는 2005년 ‘국립이민자환영기구(Agence Nationale de l’Accueil des Étrangers et des Migrations: ANAEM, <http://www.anaem.social.fr>)’를 설립하였으며, 이 기구에서는 이민자에 대

한 지원 서비스를 집행하고 있다.



<그림 III-12> '국립이민자환영기구' 홈페이지

나) 교육우선지역 설정(ZEP : 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선정 기준은 학생들의 학업 상태, 이민 가정 자녀의 취학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 실업률, 외국인 비율, 인구집중도 및 교육지원 활동 개척률 등이 있다. 이 정책은 다문화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그 혜택이 외국인인 이주민 가정이 밀집한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합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 ZEP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근무하는 교사에겐 다른 지역보다 보수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 근무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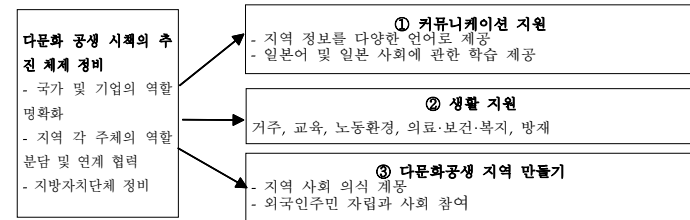
5. 일본

가. 개관

일본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을 강조하였던 국가로 외국인에 대하여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말 일본 내 외국인 등록자 수가 200만 명에 이르며 이는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하여 50%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정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공생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 정부 차원의 사회 통합 정책 및 다문화 관련 정책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총무성의 경우를 제외하면 다문화공생이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 통합과 관련한 체계적, 포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단순 노동자의 이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영주자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 핵심 부처는 법무성이며, 법무성은 국경 통제,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 거주 외국인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부서는 총무성이며, 총무성의 업무 중에 지방 자치를 관할하는 역할이 외국인 문제에 대응에 대한 배경이 되었다. 일본에 다수의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지방 단위에서부터 일본 현지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행정·복지·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2005년 총무성은 “다문화공생추진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림 III-13> 총무성의 다문화공생 프로그램

또한 2006년 12월에는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다.

<표 III-4>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

대응책	내용
외국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일본어 교육의 충실화, 방법 대책 충실, 주택 입주 지원, 외국의 정보 수집 및 보급

외국인 어린이의 교육 충실화	공립학교 등에 있어서의 교육 충실화, 취학 촉진, 모국 정부와의 협력 추진
외국인 노동 환경 개선	사회보험의 가입 촉진, 사업주 지도 강화, 고용 안정
외국인 재류 관리 제도 개선	외국인 고용 상황 보고 제도 의무화를 통한 외국인의 주거지 및 직장 파악 → 행정서비스 제공, 아동의 취학 촉진, 사회보험 가입 촉진 등

나. 사회 통합 정책 프로그램 및 사례

1)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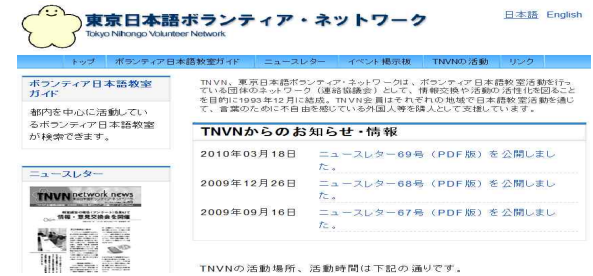
가) 일본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미에현(縣)의 경우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일본어 학습 지원 및 생활 상담, 각종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나가노현(縣)의 경우 일본어 학습 리소스 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인주민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생활 지원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신주쿠구(區)일본어 교실은 신주쿠구(區)에서 운영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익히기 위한 초급 일본어 교실로, 다문화 공생 플라자 외 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6개월을 한 학기로 주 1~2회 교습이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습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주쿠구의 경우 현재 약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신주쿠구(區) 일본어 교실은 신주쿠구(區)가 운영 주체로 예산 및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의 대표 사례로는 <그림 III-14>에 제시된 도쿄 일본어 자원봉사 네트워크(Tokyo Nihongo Volunteer Network : TNVN)가 있다. TNVN은 자원봉사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네트워크이며 1993년 12월에 결성되었다. TNVN의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일본어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발간
- 「자원봉사 일본어 교실 가이드」 발행
- 일본어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 자원 봉사 단체·개인 상호간의 정보교환
- 일본어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

TNVN의 회원은 도쿄 20개 구와 주변 16개시에서 자원봉사 일본어 교실 활동을 실시 중인 단체(정회원) 및 개인(협력회원), 활동의 취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찬조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수는 2007년 정회원 79개 단체, 협력회원 38명, 찬조회원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TNVN 회원들은 각 지역의 일본어 교실 활동을 통해 언어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상 회화 연습 장소 및 일본어와 외국인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림 III-14> 도쿄 일본어 자원봉사 네트워크(TNVN) 홈페이지

<표 III-5> TNVN 주요 활동

주요 활동	내용
「자원봉사 일본어 교실 가이드」 발행	- 일본어 학습자와 자원봉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1994, 1997, 2004, 2007년에 발간) - 자원봉사 교실, 구청, 도서관, 국제교류협회, 대사관 등 공공시설에 배포
TNVN 홈페이지 운영	- http://www.tnvn.jp - 일본어 자원봉사 활동 정보 및 각종 최신 정보 게재
정보 교환회 및 강습회	정보 교환 및 토론의 장소로 개최
상담 창구 운영	일본어 자원봉사 활동 전반, 일본어 자원 봉사 강좌 기획 및 강사 소개 등 협력

2) 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

가 커뮤니케이션 지원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적인 행정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13개 언어로 방송하는 외국어 방송국인 FM COCOLO를 개국하기도 하였다. 또한 나가노현(縣)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의 상담기관(보건소, 아동상담소)등에서 일본어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縣)민의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역이 가능한 시민을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로 등록하여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즈오카시의 경우 도서관에서 다양한 언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이치현(縣), 쿄마현(縣), 나가노현(縣), 키후현(縣), 시즈오카현(縣), 미에현(縣), 나고야시(市)의 경우 ‘다언어 정보제공 네트워크’ 및 ‘다언어 상담창구 정보제공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6개 현(縣) 내의 시정촌 등에서 작성한 다국어 문서를 아이치현(縣) 웹사이트에 검색 가능한 형태로 탑재하여, 시정촌 직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가나카와현(縣) 국제교류협회는 다국어 생활 정보 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체나 NGO가 발행하는 다국어 생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갱신되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다언어 생활 정보 센터’를 개설하였다.

나 생활 지원

일본 사회에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교육,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생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나카와현(縣)의 경우 부동산 업계, 각 지역의 국제교류협회, YMCA, 행정 당국 등의 협력으로 외국인 거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주택 관계의 각종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며, 다국어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외국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가와사키시의 경우, 외국인 및 고령자, 장애인 등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책임을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거주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치현(縣)의 경우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마련하였는데, 민간 법인과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의 6개 자치체가 연계하여 의견 교환 모임을 개최하며,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쿄시(市)의 경우, <그림 III-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거주에 필요한 각종 제반 제도 안내, 생활 정보, 복지 관련, 교육, 직업, 문화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쿄시는 ‘도쿄도 외국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상 생활에 관한 문제나 긴급시 문의, 일본의 관습·문화·사회 제도 등에 관한 사항, 손해 배상 및 보험, 가족 및 자녀 관련 문제 등을 주로 상담해준다.22)



<그림 III-15> ‘도쿄’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

(출처 : <http://www.tokyo-icc.jp/guide/index.html>)

다) 도쿄 다문화공생센터22) 운영

2001년 4월에 센터를 발족하였으며, 2006년 4월에 ‘다문화공생센터·도쿄’로 명칭을 바꾸고 비영리법인을 취득하였다. 이곳에서는 이주민 자녀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여성, 외국 국적 여성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I-6> 도쿄 다문화공생센터 주요 사업 내용

(출처 : <http://www.tabunka.jp/tokyo>)

주요 활동	사업명	사업대상	주요 사업내용
교육	다문화	비취학학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주민 자녀 : 일본어

22) http://www.tokyo-icc.jp/guide_kor/index.html (검색일자 : 2010. 5. 28)

23) <http://www.tabunka.jp> (검색일자 : 2010. 5. 29)

사업	프리스쿨 및 학업부진 중·고등학생	지도 및 교과지도 -학업부진 중·고등학생 : 일본어지도 -고교 진학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다언어 진학 가이던스	중학생 및 부모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이주민 중학생 및 부 모 대상 다언어 진학 설명회 -일본어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아이들 프로젝트	이주민 자녀 -이주민 자녀들간의 친교와 만남
자녀 양육 지원 사업	다문화 자녀교육 네트워크	다문화 자녀 교육 관계자 -보육교사, 아동 관련 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NGO 간의 네트워크 구축 -연수, 포럼 개최, 정보 교환 등
	생활·교육 상담	이주민 자녀 및 부모 -생활 전반 관련 상담 -교육 관련 상담
정보계 공사업	다언어 정보 제공/간행 물	이주민 자녀 및 부모 -다언어 진로가이드북, 다문화 자녀 노래모음 집 등 각종 출판물 발간 사업
조사 사업	이주민 자녀 교육실태 조사	이주민 자녀 -일본 공립학교 및 국제 학교 등에 제학 중인 이주민 자녀의 교육 실태 조사

6. 호주

가. 개관

호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 중 하나로, 호주의 이민 역사는 1788년 영국인의 정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세기 중엽 빅토리아 주 금광 개발과 함께 중국인이 호주로 많이 유입되었으며, 퀸즐랜드 주의 사탕 수수 산업 발달로 태평양 연안 국가의 많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었다. 유색 인종의 유입으로 인한 갈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1901년 유색 인종에 대한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제한 법안 1901(Immigration Restriction Bill 1901)'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유럽인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으로, 이 법으로 인하여 백호(White

Australia)를 기반으로 한 호주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법은 195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인구 감소 및 노동력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베트남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아시아인의 비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호주는 다인종·다민족의 사회의 모습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06년 호주의 인구는 약 2천 1백만명으로, 그중에서 원주민인 어보리진은 약 2.5%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 중에서 43%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에서 출생하였다. 해외에서 태어난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해외 출생자 중 약 14.2%는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다. 2006년 인구 총 조사에서 나타난 호주인의 인종적 정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III-7> 2006년 인구 총 조사 결과 - 호주인의 인종적 정체성(상위 10개국)
(출처 : 호주 통계청(<http://www.abs.gov.au>))

순위	국가	비율(%)	순위	국가	비율
1	호주	35.8	6	독일	3.94
2	잉글랜드	30.5	7	중국	3.25
3	아일랜드	8.75	8	그리스	1.77
4	스코틀랜드	7.29	9	네덜란드	1.50
5	이탈리아	4.14	10	인도	1.14

<표 III-8>는 2006년 기준으로 출생지가 해외인 인구수를 나타내며, 오늘날의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호주로 이민을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호주의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8> 2006년 인구총조사 결과 - 해외 출생 인구수
(출처 : 호주 통계청(<http://www.abs.gov.au>))

순 위	국가	비율(%)	순 위	국가	비율
1	영국	1,153,264	11	말레이시아	103,947
2	뉴질랜드	476,419	12	네덜란드	86,950
3	중국	279,447	13	레바논	86,599
4	이탈리아	220,469	14	스리랑카	70,908

5	베트남	180,352	15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68,879
6	인도	153,579	16	인도네시아	67,952
7	필리핀	135,619	17	미국	64,832
8	그리스	125,849	18	폴란드	59,221
9	독일	114,921	19	피지	58,81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18,816	20	아일랜드	57,338

나. 사회 통합 정책 프로그램 및 사례

1)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²⁴⁾

호주에서는 연방/주 정부 차원에서 이주·난민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ESL 프로그램(ESL - New Arrivals)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입국한지 6개월 이내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 1인당 20주 정도의 ESL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주나 대도시에 위치한 예비영어센터/학교(Introductory English Centres/Schools)에서도 청소년에게 ESL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호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교육 체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나) 브리스번의 VORTCS 프로그램(Volunteer Refugee Tutoring and Support)

이 프로그램은 자원 봉사자를 채용하여, 이들을 교육한 후 퀸즐랜드 남부 지역의 난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들의 영어 공부 뿐 아니라, 학교 공부를 도와주며,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VORTCS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술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24) Working with Multicultural Youth : Programs, Strategies and Future Directions



<그림 III-16> VORTCS 프로그램 홈페이지
(출처 : <http://www.refugeetutoring.org>)

다) TAFE 언어 코스(TAFE Language Courses)

각 지역에 마련된 TAFE ELS 코스에서도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TAFE가 지원하는 언어 코스는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접근성이 다소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2) 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

가) 인도주의적 정착 전략 서비스 (IHSS : Integrated Humanitarian Settlement Strategy)

IHSS는 인도주의적 입국(humanitarian entrants)에 따라서 호주로 유입된 사람들, 즉, 난민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각종 지원을 펼치는 서비스로, 상담 및 임시 숙소, 장기 거주 주택 서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한다. IHSS는 이민자 정보센터(MIR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멜버른의 AMES(성인 다문화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 2007년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청소년 공동체 가이드(youth community guides)'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는 이주·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학교 관련 오리엔테이션 정보, 청소년 서비스, 여가 활동 프로그램, 교통 및 지역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신규 이주민 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NAYSS : 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s)

NAYSS는 호주에 입국한지 5년 미만인 12~21세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노숙자 혹은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 및 재정 지원, 사회로의 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NAYSS는 가족, 공동체 서비스, 원주민 부서(FaCSIA)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14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NAYSS의 지원을 받은 이주/난민 청소년의 경우, 새로운 연계(reconnect), 일자리 찾기,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 무슬림 청소년 고용 증진 프로젝트(Muslim Employment Youth Worker Project - DIAC & Dept. of Employment & Industrial Relations)

무슬림 청소년 대상 고용 증진 프로젝트는 퀸즐랜드 주정부와 고용 및 산업관계부(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에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용 상담가를 무슬림 지역 사회에 배치하여 지역 사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라) 신규 이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 책자 발간



<그림 III-17> 호주 이민국 홈페이지 - 신규 이민자/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정보 제공

(출처 : <http://www.immi.gov.au>)

호주 당국에서는 호주로 새로 입국한 이민자, 혹은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The Beginning a Life in Australia」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한다. 이 책자에는 호주 국가 전체에 대한 정보 및 각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를 비롯한

3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수도,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지방, 퀸즐랜드, 남부지방, 타즈마니아, 빅토리아, 서부지방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I-18>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에 대한 신규 이민자/난민 대상 책자

마) 건강과 마약 관련 프로그램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난민 건강 클리닉에서 '다문화/청소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민자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 건강서비스와 기타 정보 프로그램이 있다. 건전한 성생활과 에이즈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술집 단위로 이주·난민 및 유학생을 상대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고문과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난민청소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7. 시사점

각 국가별 다문화 교육의 역사 및 구체적인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다

문화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국가마다 각 국가별 역사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특징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학교 상담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 상담교사는 이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가정과 연계하여 학부모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영어구사능력에 따라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이주아동을 위한 '제 2언어로서의 영어 특별프로그램'(ESL program)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하여 영어구사 능력과 수준에 따른 일반과목의 학습에도 단계별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주 아동들은 ESL과정을 일정기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에야 일반학급에 편성된다. 또한 이주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학년을 낮추어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학업성취도에 따라 월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주의법(Multicultural Act)'을 제정하여, 여러 인종 및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법률적 기반을 통해서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다문화 구성원들을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캐나다의 제도적 차원의 각종 사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및 각종 정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할하고 있었으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캐나다는 이민자 통합 정책에 대한 일관된 정책 논리의 구축이 가능하였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각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전체적 차원에서 감독 및 통제를 실시하여, 다문화 교육 관련 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교육 관련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1차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급 인력 수용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불법체류자가 될 소지가 있거나 사회에 혼란 및 각종 문제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차단하는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반대되는 폐쇄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영국/프랑스 사회로 진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확실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해 실질

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관련 정책을 펼칠 때, 그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질과 실질적 혜택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정책보다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훨씬 많았으며, 이는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NGO, NPO, 자원 봉사 단체 등이 일본의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융통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힘들다면, 지방 차원에서 각종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사회마다 다양하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호주의 정책은 단순히 물리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 구성원들의 정체성 문제 및 심리 상담,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반 및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특히 정서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호주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여러 나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민자, 입국자들이 초기에 접할 수 있는 각종 책자를 다양한 언어로 발간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30여 개국의 언어로 발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책자에는 각종 생활 서비스, 언어 교육 등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각 국가의 기본적인 소개 등을 담겨 있었다. 또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지역별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서 다문화 구성원들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각 국의 언어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첫걸음부터 혼란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각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국내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사례 및 수요 분석

국내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갈 수 있는 학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언어적 측면이나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서 동반·중도 입국 자녀들의 입학에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안 학교를 비롯한 몇몇의 학교를 통해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국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주요 대안학교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이 있는 학교 등을 중심으로 2010년 2월,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주최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재한몽골학교, 아시아공동체학교, 새날학교, 원일초등학교,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담당자를 초청,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정책과장님과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소장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열린 간담회를 통해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문제인식과 현 교육체제에서 실현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간담회에 참여한 학교 및 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사례와 문제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개선방안 및 대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재한몽골학교

가. 학교 설립취지 및 현황

1999년 12월에 설립한 재한몽골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 곳으로서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오거나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매우 많다. 따라서 재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동반·중도입국 자녀라 볼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13명을 포함하여 현재 초·중등학교에 걸쳐 총 82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9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제는 몽골의 학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5-9학년, 고등학교 10-11학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현재 정규교원 11명, 비정규 교원 30명으로 총 41명의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 있다.

2006년 몽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허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몽골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몽골정부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한국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지원이 없어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유·초등부의 경우 이중국적자 포함 내국인 3명, 외국인 28명,

중학교의 경우 이중국적자 포함 내국인 4명, 외국인 40명이 재학중에 있다. 재한몽골학교는 국제학교로서 지금까지 총 400여명의 몽골 근로자 자녀들이 거쳐 갔으며 총 52명의 4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재한몽골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에서의 사회화를 모두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나. 교육 과정

몽골정부로부터 초·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한몽골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몽골로 돌아갈 경우 재학년에 그대로 전입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재한몽골학교는 몽골의 학제를 그대로 따르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주요과목은 몽골어, 몽골역사, 몽골수학, 몽골법 및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몽골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학업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한몽골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 부모가 이주근로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동반·중도입국한 경우도 상당수라 몽골의 교과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의 몽골로 돌아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양산한다. 또한 몽골학생들의 경우 한국어와 몽골어에 모두 유창할 경우 몽골로 돌아가서 고임금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교육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반한감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준다.

하지만 부모의 결혼이주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장시간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한국내의 상급학교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주요과목을 제외한 기타과목으로는 한국어, 영어, 과학,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과목의 경우 한국인 교사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교실 수업을 통해 한국어에 많이 노출되고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초기 입국자녀로서 한국어 습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몽골인 교사가 한국어 초급단계를 몽골어로 가르침으로서 동반·중도자녀들이 입국초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하고 있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근 몽골에서 유학이나 이주 근로, 결혼과 같은 이유로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부모와 동반·중도 입국한 자녀 또한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재한몽골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는 많으나 시설,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열악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몽골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에서는 사적인 시설 후원을 통해서만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더불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한국의 일반 학교에서 쉽게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아 학생들이 졸업 이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한 재한몽골학교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부에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별도로 이뤄지고 그 혜택을 다양한 측면의 다문화가정자녀 교육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요구된다고 하였다. 현재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교육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그 대상을 보다 다각화·세부화 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아시아공동체학교

가. 학교 설립취지 및 현황

2006년 개교한 아시아공동체학교는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생태교육을 교육이념으로 선정함으로써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대안 초등학교이다.

민주적, 창조적 세계인으로서의 성장을 교육목표로 하여 관용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0여명의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아시아공동체학교를 거쳐 갔으며 이들 중 30여명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연령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직업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학생들의 국적은 중국, 러시아, 필리핀, 일본, 네팔, 한국 등으로 다양한 학생층을 이루고 있다. 입학조건으로는 1순위가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외국인체류자) 자녀, 2순위는 외국인노동자 자녀, 3순위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 결혼가정의 자녀, 4순위는 다문화가족자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인 자녀에게도 입학이 허용된다. 한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내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도 꾸준히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현재 사단법인으로서 제도권 교육에 의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후원만을 통해 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2010년 5월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로서 현재까지 약 5년간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현재 초등학교 1학년~6학년 과정과 디딤돌반(한국어를 모국어

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 이주한 다문화 아동들의 한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개설된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는 한 학년 당 10명을 정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한 학급당 다문화가정 자녀 6~7명, 한국 일반가정 자녀 3~4명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사현황은 국내교사 7명과 자원봉사자로 지원한 내·외국인 교사 20여명이 영어, 국어, 수학 등 기본적인 교과과목과 태권, 풍물, 공예 등 예체능 및 2011년 1학기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될 예정이고 점차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장시켜 갈 계획에 있다.



<그림 IV-1> 아시아공동체 학교

나. 교육 과정

아시아공동체 학교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와 결혼이주자 자녀를 대상을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다시 모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만 결혼이주자 자녀의 경우는 한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자녀 중에서 중도·동반 입국을 통해 한국에 온 학생들의 경우 모국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한 채 한국으로 온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심과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학생들의 경우, 단순한 한국어 교육과 같은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룰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시아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한명, 한명의 개성을 존중한다.

2.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3.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기에 배움의 속도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4. 학생들의 일반적 발달단계와 개별적 능력을 고려하여 학생 한명, 한명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5. 배움의 욕구가 일어나도록 자극을 주고 환경을 만들되 배움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6. 머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오감을 통한 교육을 지향한다.
7.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과 책임감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든다.
8.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자연,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훌륭한 교사임을 잊지 않는다.
9.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평생 이어갈 수 있도록 배움의 원동력을 길러준다.

아시아공동체 학교의 수업은 주지교과, 외국어교과, 예체능교과, 감성교과, 미디어정보교과,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한국어 수업(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을 매일 4시간씩 진행하고 이는 수준별 수업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해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은 모국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새로운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반·중도입국자녀 중, 연령이 높은 학생들의 대부분의 경우 모국에서의 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부모의 재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오게 됨으로서 연령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나 기초학력수준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일선 초·중등학교로의 진학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중도·동반입국 자녀를 입학시킬 시 한국어교사를 따로 배치해야 하는 등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입학울 허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다문화가정 학생들보다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연령에 따라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화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른 사회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반·중도입국 자녀 중 10세 이전의 학생들의 경우, 아직 모국에서의 사회화가 완전히 습득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화 교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하지만 10-13세 학생의 경우 학교교육만

을 통해 사회화를 이루고자 할 경우, 기존 사회에서 습득한 사회화와 충돌하게 되어 학생도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사회화 교육의 효과 또한 10세 이전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17세 이상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인 대안학교에서 입학울 허용하는 연령을 넘어서기 때문에 외국인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처럼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 인식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모국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한국사회로 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또한 부모가 한국인과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편입됨으로서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경우라면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정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과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 상담교사는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자녀 특히 동반·중도입국자녀가 있는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에서도 올바른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모국에서 학교교육을 받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기초적인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부모의 재혼과 이주를 통해 교육적 공백이 장기간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학생들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동반·중도입국자녀가 다니는 대안학교들의 경우 비인가 학교들이 많은 가운데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증가할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을 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새날학교

가. 학교 설립취지 및 현황

2005년에 코시안 대안학교로 시작하여 2007년 초.중고 통합형대안학교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새날학교는 매년 40명의 학생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있다. 새날학교의 입학대상은 1)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양된 한국어에 어려움에 있는 자녀 2) 외국인 근로자 자녀 3) 유학생 자녀 4) 북한이탈주민자녀 5)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수업료는 무료로 제공하며 입학연령제한은 없다. 2010년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날학교는 16개국 84명의 학생이 현재(2010년 3월 기준) 재학 중이다.

다음은 성별, 연령별, 출신국가별 새날학교 학생현황을 나타낸다.

<표 IV-1> 성별, 연령별 새날학교 학생현황 (2010.3 현재)

	7세 이하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계
남	1	1	2	1	1	4	1	-	4	4	5	10	7	46
여	3	1	3	2	1	-	1	-	3	1	3	7	6	36
계	4	2	5	3	2	4	2	-	7	5	8	17	13	82

<표 IV-2> 출신국가별 새날학교 학생현황 (2010.3 현재)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북한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남아공	네팔	합계
남	28	1	1	2	1	-	1	3	1	2	2	2	1	1	52
여	11	3	1	3	1	2	2	4	-	3	1	-	1	4	30
계	39	4	2	5	2	2	3	7	1	5	3	2	2	5	82

새날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자 자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속해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나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많이 분포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새날학교에 속해있는 결혼이주자 자녀 가운데는 부모의 재혼으로 해외에서 한국사회로 이주한 동반·중도입국자녀 또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 가운데는 재혼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온 학생들이 20여명 정도 있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호시설(일명'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자녀 가운데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음은 2008년 광주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른 통계이다.

- 기 간 : 2008. 4-5(2개월간)
- 대 상 : 광주광역시 거주 결혼이민자가족
- 조사자 : 91개 동사무소(통장)

<표 IV-3> 광주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결과

구분	결혼이민자가족			결혼이민자 자녀수		
	기존	결과	비교(%)	기존	결과	비교(%)
계	2,497	1,413	56.6%	1,231	1,264	102.7
동구	207	64	30.9	85	75	88.2
서구	356	299	84	171	245	143
남구	353	194	55	159	179	112
북구	876	514	58.6	358	383	107
광산구	705	342	48.5	458	382	83.4



▲ 새날학교



▲ 새날학교 수업 모습

<그림 IV-2> 새날학교의 현황

새날학교의 경우, 2010년 3월까지 미인가 대안학교로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교과부와 정부의 도움을 통해 2011년 3월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공립형 대안학교로서 인가를 받기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 교육 과정

새날학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능력 차이에 따라 1인 1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무학년제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운영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육시수를 구성하며 재량활동을 활용하여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위한 부모 또는 학생의 모국어교육을 따로 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새날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학생들도 정규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 한국학생들 중심이 아닌 교과과정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새날학교 초등학교의 교과 시간배당을 나타내는 <표 IV-4>과 같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새날학교를 거쳐 일반학교로 상급 진학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 이유로는 주로 엄마가 재혼으로 한국으로 온 사례가 많아 그 기간 동안 자녀가 모국에서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도 입국한 경우가 많아 학생의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진입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한국인 새 아버지와의 관계나 입양 문제 등을 겪으면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개인 스스로 겪는 자아정체성이나 언어·문화적 충격 이외의 가정에서의 불화문제 또한 상당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맞벌이 하는 부모를 위해 연령이 다소 높은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게 하는 대신에 재혼한 부모의 자녀를 돌보는 등의 집안일을 하게 된다. 이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만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사회화는 물론 학교교육 또한 받지 못하게 됨으로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한국

<표 IV-4> 새날학교 초등학교 교과 시간배당

구분		초 등 학 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기 준			실 시				기 준			실 시							
학년	1	2	3	4	5	6	1	2	3	4	5	6	학년	3	4	5	6		
교과	국어	210 (238)				(136)	국어 210 (7)	204 (6)	170 (5)	170 (5)	170 (5)	170 (5)	국어		(136)	136 (4)	136 (4)	136 (4)	
	도덕	120 (136)	238- 406			(34)	수학 120 (4)	34 (1)	34 (1)	34 (1)	34 (1)	34 (1)	사회	340	(136)	136 (4)	136 (4)	136 (4)	
	사회					(68)	비틀 68 (2)	68 (2)	68 (2)	68 (2)	68 (2)	68 (2)	수학	238	(136)	136 (4)	136 (4)	136 (4)	
	수학	60 (68)				(68)	비틀 60 (2)	136 (4)	136 (4)	136 (4)	136 (4)	136 (4)	과학		(68)	102 (3)	68 (2)	68 (2)	
	과학	90 (102)	3. 4학년 136- 272			(68)	즐거 90 (3)	102 (3)	68 (2)	102 (3)	102 (3)	102 (3)	체육		(102)	102 (3)	102 (3)	102 (3)	
	실과	180 (204)	5. 6학년 170- 340			(34)	즐거 180 (6)			34 (1)	34 (1)		음악	238	(34)	68 (2)	68 (2)	68 (2)	
	체육					(34)	우리 30 (1)	102 (3)	102 (3)	102 (3)	102 (3)	102 (3)	미술		(34)	68 (2)	68 (2)	68 (2)	
	음악	30 (34)				(34)	우리 30 (1)	34 (1)	34 (1)	34 (1)	34 (1)	34 (1)	실과· 직업		68			68 (2)	
	미술					(34)		68 (2)	68 (2)	68 (2)	68 (2)							68 (2)	
	외국어 (영역)					(34)		34 (1)	34 (1)	34 (1)	34 (1)	34 (1)							68 (2)
키로지원					68						68 (2)								
특별활동	자기 주도						30 (1)	34 (1)	34 (1)	34 (1)	34 (1)	34 (1)	자기 주도					34 (1)	34 (1)
	다 문화						30 (1)	34 (1)	34 (1)	34 (1)	34 (1)	34 (1)	모 국어					34 (1)	34 (1)
	인 성	60 (68)	68			102	30 (1)	34 (1)	34 (1)	34 (1)	34 (1)	34 (1)	인 성	102				34 (1)	34 (1)
	교 육												교 육						
상 담												상 담						34 (1)	
운 동												운 동						34 (1)	
국 제							68 (2)					68 (2)	국 제					136 (4)	102 (3)
이 해												이 해							
특 활	30	34	34	68	68	68	30 (1)	34 (1)	68 (2)	68 (2)	68 (2)	68 (2)	특 활	34	68	34 (1)	68 (2)	68 (2)	
수 업	830 (24)	850 (25)	952 (23)	1,054 (31)	918 (27)	986 (29)	1,054 (31)						수 업	952	1,054	986 (29)	1,054 (31)		

의 학교교육을 받아온 학생들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서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남성과의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마련하고 모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통로를 이용

해 한국으로 오는 동반·중도입국자녀가 대다수인 현 상황에서 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이 때,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은 주로 한국가정으로서의 입양 형식으로 들어오는데 한국아버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들은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소속되지 못한 채 낯선 한국사회에서 표류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교육적 측면에서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학습을 통한 도움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보호하기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원일초등학교

가. 학교 현황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원일초등학교는 해외노동이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소외받는 제3국인을 위한 지원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2006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 2010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에서는 러시아, 몽골, 미국, 스리랑카,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콩고, 태국 등 12개국으로부터 온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입학하여 교육받고 있다. 원일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학급의 경우 15명이 정원이라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급 개설 초기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의 구성은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의 자녀들과 그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초등학교 학령을 넘긴 청소년들이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입학 문의보다 국제결혼 가정 중에서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서 재혼을 한 경우, 모국의 있는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동반·중도입국 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문의와 입학 의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학급의 특성 상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에 한하여 입학과 취학 조건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고, 귀화를 한 경우 형식적 요건 상 특별학급에 입학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2010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출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나. 교육 과정

원일 초등학교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은 방과 후 실시되는 특별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한국인 학생들과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생활하고 방과 후에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에 시행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지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 의사소통중심 어휘지도

학교생활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학교 후 가정에서 모국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한국어 활용능력 신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별학급에서 학습지도를 할 때 한국 생활과 학교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한국어, 각 교과나 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 안내장을 통한 활동 준비 지도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주의 경우 부모들이 한글에 익숙하지 못해 특별학급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준비물을 잘 챙겨오는 것이 어렵고, 과제를 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따라 특별학급에서는 각 학교 행사와 관련된 안내장을 학년별로 그림과 함께 간단한 한국어로 표현하여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안내 자료를 함께 이해하기 쉽고,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 문화교실수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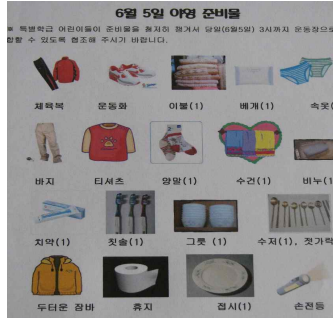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특별학급 학생들과 협력학급의 학생들은 매월 한 차례씩 문화교실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원일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문화교실수업의 목표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안산교육청과 안산시의 지원으로 ‘아시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이나 한국 어린이들 모두가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중요성을 인식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특별학급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지구촌 가족 야영(연1회), 한국 음악체험교실(주1회), 한국미술체험교실(주1회), 한국어교실(방학중), 한국가정 홈스테이(연2회)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안산시와 사회복지기관, 여러 공공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지도하고 있다.



▲ 협동하여 글자 만들기



▲ 야영 관련 안내장 및 낱말 공부

<그림 IV-3>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9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5명의 특별학급 정원 중에서 7명의 학생이 국제결혼가정 중에서도 재혼가정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들이 현재는 입양 절차 중에 있고, 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차후에 이와 같은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국제문제가 해결될 경우, 특별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법적으로는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동반·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대다수가 학령을 넘긴 상태에서 한국으로 오고 그 기간 동안의 교육 방치 등의 문제로 학습의 공백기가 있어 학습의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와 학교문화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면서 혼란과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중도입국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정자녀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그 교사가

동반·중도입국자녀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상담 또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절적인 차원에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양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자녀 특히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전문가 양성도 매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원일초등학교 특별학급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한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상급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입학허가가 쉽게 허락되고 있지 않고, 자녀의 부모들 또한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동반·중도입국자녀 중에서 부모의 재혼을 통해 한국에 온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급학교의 진학이 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현재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공통적인 요구는 이들이 상급학교진학을 하는 것에 있어 일반 학생들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선 상급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입학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은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한국 사회에서 소외 된 대상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지원과 법적으로 강화된 측면으로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상급학교의 진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무지개청소년센터

가.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목적

무지개청소년센터는 2006년에 설립하여 인권 및 지역에 기반 한 이주배경(북한 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정착 지원과 청소년 다문화 역량개발선도,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 정책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시켜왔다. 최근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로 진입하는 성장기 입국 초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길잡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실시하였다. 현재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나 지원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하고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한국어 수준이나 정체성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사회 적응 또한 개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 일반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여 '입국초기 다문화아동·청소년 길잡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재혼한 부모에 상황에 맞춰서 한국어로 입국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학교 입학자체에 대한 포기가 일어날 수 있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모국과 한국문화의 유동성과 복합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관점을 지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입국초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길잡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겪는 한국어, 교우관계, (국가)정체성의 혼란, 학교의 편입학 및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 취업, 법률 및 생활정보 습득 등의 문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입국초기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본능력, 정체성 확립 및 사회적 유대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초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나. 프로그램 내용

'입국초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길잡이 프로그램'은의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교우관계 및 자아정체감 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의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교육기간은 주5일/전일제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6주간씩으로 기간을 분리하여 1단계와 2단계로 분리 시행을 목표로 한다. 1단계의 경우 한국어 집중교육과 학과지도(예·체능과목 중심) 운영을 하고, 2단계는 학교와 사회 적응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정체성 및 생활문화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다. 기대효과

지금까지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계별로 한국어 교육과 편입학지도, 진로교육을 제시함으로써 입국 초기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사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2011년에는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동반·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6.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다문화교육 수요 분석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용어의 등장은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2010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의 일부분으로서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결혼이주자부모를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동일한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적합한 형식의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다문화교육의 정확한 수요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현황파악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나 또는 일선학교의 특별학급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담당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입국초기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였다.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연구에서도 기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다문화가정실태조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한 자료가 없어 3개월간의 정해진 연구기간동안 기존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현황을 유추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그들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교육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부처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특별귀화 신청자 및 부모의 생년월일 등을 파악하고 제공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NEIS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재학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에서 특별귀화 신청자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전송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NEIS 교육업무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파악해서 전송을 한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전송자료와 NEIS 서버탐색자료의 확인 작업을 통해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재학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에 있으며 현황파악 자료는 2011년에 공개 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거점학교²⁵⁾ 지정 운영이 요구되는 점이다.

25) 거점학교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10명 이상인 학교 중에서 지정하고 방과후한국어교육, 교과보충교육 등을 지원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는 인근 학생들도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교사와 학부모 연수 등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다.

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종교 계열의 재단의 기부와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원 미충원, 재정악화 등의 외부요인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오성배, 2010). 또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 가운데 학령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입학허가를 해주는 일선 학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선학교가 13세 이후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에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더불어 다수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경우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입학초기 어려움 없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거점학교를 설치해 지정 운영하는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2010년 현재 60개교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8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 것에 반해 초·중등 간의 교육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이 형성된 거점학교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거점학교 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선택 가산점을 통해 거점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세 번째,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일반다문화가정자녀들과는 특성화되고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추가 개설이 요구된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는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인다. 또한 동반·중도입국을 한 연령에 따라서도 학생들마다 학교 교육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들의 경우 모국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온 경우도 있고 한국에 오기 전 이미 국가정체성이나 자아정체감이 모국에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형성되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온 초기 입국 당시 혼란감과 불안이 높아진다. 초등학교 학령을 기준으로 13세 이전에 한국에 온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단기간의 사회화 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생활에 적응을 손쉽게 하는 반면에, 13세 이후의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 있어 매우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 가운데에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먼저 결혼을 통한 이주를 한 경우 상당기간 세심한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심지어 본국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하며 방치된 경우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입국 후 쉽게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채 떠돌거나 가정 내에서 가사일을 도우면서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동반·중도입국자녀는 기존에 다문화가정자녀들로 국한시키던 결혼이주자나 노동이주자 자녀 중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보다 보다 더 폭넓은 관점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이미 모국어에 적응된 학생들에게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재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의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동일하게 할 경우 동반·중도입국들이 교육과정에 맞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다문화가정자녀라 하더라도 각각의 연령과 특성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모국에서의 언어와 문화를 이미 습득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안)의 예시이다.

<표 IV-7>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안)

(교육과학기술부, 2010)

-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정체성 함양교육, 교과학습 및 생활문화교육, 개인·가족 상담 등	
영역	내용
한국어교육	기초한국어
	학교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관계 및 정체성	교육관계 형성 프로그램(초·중등)
	정체성 향상·상담 프로그램(초·중등)
생활문화	진로지도
	현장학습
	교과지도
가족상담	가족단위 상담 및 교육

- 교·강사: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교사 등을 과정 책임교사로 지정하고, 교사자격 소지자, 이중언어 강사, 대학생 등이 보충

- 운영시간: 예비과정 전담교사 배치가 가능(교육청에서 발령 대기 교사 활용/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하고 유휴 공간 등이 있는 경우, 전일제로 운영

※ 교육인력 및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

- 장소: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내 다문화교실 등 유휴교실에서 운영

- 교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교육청 개발 자료 등 활용

- 학적(소속): 학생은 전·입학을 통해 거점학교 또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학적을 생성하고, 예비과정에 참여

- 과정규모: 1개 과정(학급)은 20명 이내로 운영
- 교육기간: 1-6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학생의 수준 및 적응 속도 등 고려)

더불어 연령이 13세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 특히나 자기정체성이나 관계형성능력의 차원이 더욱 중요시 되는 역량으로서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서 이중언어교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이중언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원 양성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및 학습 지원을 위해 한국어와 출신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인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연계를 통해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교육하여 가정학교 등에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2010년 기준으로 서울에 62개교, 경기도는 35개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다.

오성배(2010)는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한국어 습득과 한국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한 디딤돌 학급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러한 디딤돌 학급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및 학습 수준에 맞추어 1:1 맞춤형 수업 진행을 기본으로 하며, 각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외국 거주 경험 유무, 한국어 능력차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준별 교육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무학년별 운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이 때 무학년제는 학생의 입학시기와 학습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도, 동반입국자녀들의 경우 대개 동연배의 아이들보다 낮은 학급에 진입하는 경우 외국의 경우처럼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따라 월반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인성함양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미술, 음악, 체육 활동 등을 통한 예체능 교육을 일반 한국인학생들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한국인 학생들과의 융화와 협력을 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진로지도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체계적인 연계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같

은 외국의 경우 많은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실제로 일직 전문계 고교를 통한 기술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기업체들과 체계적인 연계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국 실정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도 절실히 요구된다. 조혜영(2007)의 경우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가정)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2009, 이재분 외). 이는 최근에 부모의 재혼을 통해 동반·중도입국 하는 자녀가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온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처음 접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재혼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이 증폭되어 아직 정서적으로 성장이 미숙한 자녀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뿐 만 아니라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부모 또한 함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자녀의 학교입학과 진로, 사회화를 위해 부모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만한 연계망을 찾기가 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생들의 입학 방법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재혼가정을 이룸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나 가정환경의 형성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한다면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입국초기 한국사회에서의 사회화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음은 조혜영 외(2007)와 김정원 외(2005)가 다문화가정 중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내용이다.

<표 IV-6>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항

(한국교육개발원, 2009)

		필요사항	
대상	자녀 및 학부모에게 필요로 되는 사항 (조혜영, 2007)	주요 취약점과 지원현황, 향후과제 (김정원, 2005)	
	교육권보장 - 입학·졸업과 관련된 법적 기반	기회측면 - 학습권보장	
자녀	학력인정	- 모국어·모국문화 학습	
	수업적응을 위한 단계적 지도 - 한국어교육	과정측면 - 학생배려	

부 모	-한국 문화 및 역사교육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 한국어 -한국교육이해 - 안정된 생활
	일반학생들과의 상호작용(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	
	준비물 챙기기 및 숙제하기	결과측면 - 자기정체성
	학습의욕 및 학교생활 흥미고취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다문화가족 자녀들간의 이해 및 관계 개선	
	엄마의 권한 향상	
	자녀지원	
	- 한국어교육 - 아버지 교육 - 한국교육의 이해 - 부모/자녀 대화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및 한국교육에 대한 이해		
자문화·정체성 유지		
신분 보장 및 심리적 안정		
자녀의 교육관에 대한 차이 이해		

이는 외국인근로자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이기는 하나,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자녀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섯번째로는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 모국에서의 사회화가 거의 다 형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로 이주를 오고, 부모의 재혼을 통해 입양을 온 경우가 많은 만큼 청소년기의 자녀들의 경우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보통 아이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다수의 동반·중도에 있다. 이는 일반학교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특별 관리할 교사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이 학생들이 학교의 평균 학업 성취를 저하시킬 우려를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원적은 일반학교에 두고, 일반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학생에 대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과 학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이는 2009년 11월에 개정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²⁶⁾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부터 이러한 수요와 논의를 바탕으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시·도 교육청이 연계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 등 학교의 진학과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공립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및 사회·문화의 이해, 교과 등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학생선발은 교육청 관내 및 전국 단위에서 유동적으로 선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과 특히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생활과 학습 측면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중등학교를 마치게 해서 졸업장을 주든지 졸업학력을 인정해주어야만 이들의 사회 통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나 위탁학교의 경우에도 중등학교인 경우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업학교나 전문계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7. 동반 ·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모델 제시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IV-7> 동반·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단계별 모델 제시

주요 활동	활동명	주요 내용	
		현황 파악 단계	동반·중도입국자녀 현황파악 조사

26)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09년 11월)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인가 기준 완화등을 완화
-설립주체가 교지, 교사 임대한 경우에도 설립 인가가 가능하도록 완화
-대안학교 설립주체로서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협조요청 -법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특별귀화 신청자 자료를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달 -조사 관련 안내 및 조사결과를 종합 -학교에 NEIS의 관련 통계 전송 요청
		시·도교육청	-학교 전송자료와 시·도 교육청 NEIS 서버자료 확인 작업을 실시 -시·도별 동반·중도입국자녀 재학현황 취합 및 보고
		학 교	-NEIS를 통해 학생현황을 시·도 교육청으로 전송
정부 지원 단계	거점학교 지정운영	-초·중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거점학교 지정이 필요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거점학교 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선택 가산점을 통해 거점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함께 요구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 -기존학교의 통·폐합 등에 따른 폐교 등을 활용 -생활 및 학습 측면에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 부지비, 건축비 등에 있어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현재 운영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시스템을 적용하여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과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과의 연계 방안 추진 검토	
	이중언어 강사 양성 지원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하여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있어 의사소통과 학습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한국어와 더불어 출신국 언어에 대한 교육의 동시지원이 필요 -현재 부족한 이중언어강사의 수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중언어 강사 양성에 있어 활동지원이 요구 -이에 따라 한국어 및 출신국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도법, 학교 실습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 양성에 대한 보완과 강화가 동시에 필요 -다문화가정여성을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진행 중	

학교 교육 단계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출신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경우 한국사회에서의 교육과정을 연령에 맞춰 적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무학년제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
	예체능 통합교육 시행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인성함양을 위해 음악, 미술, 체육 등을 바탕으로 하는 예체능 통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이주를 통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학교별로 상담교사 배치가 요구
가정 교육 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시 진로지도를 통해 직업교육으로서의 연계방안 모색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거점학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다문화지원가족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동반·중도입국자녀 가정이 주로 재혼이나 입양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진행 -상담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주로 이주를 한 이후에 입양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새로 정착하거나 아동을 주로 출신국에서 보내고 온 이후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통계는 법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F-1(방문동거)비자 소지 입국자인데, 실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에서 파악된 2010년 F-1소지 입국자는 31,315명으로 2009년의 28,981명, 2007년 61,806명, 2005년 74,479명 등과 비교해볼 때, 연도별 증감은 있으나 꾸준히 매년 3만 명 이상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신국의 경우 중국인(한국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9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외국인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7%에 해당된다. 이 중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전체 자녀들의 86.3%로 나타나 초기연령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동반·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통계 파악은 2010년 10-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감사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 3-5월에 걸쳐 3개월 동안 이뤄진 것으로 국내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해외 교육사례를 조사 연구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발표 될 동반·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제시될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해당학교를 찾아가 참여 연구 등을 통한 질적 연구 등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과정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문제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통계에 포착되는 숫자의 경중보다는 이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적 상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실제 통계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제도권 교육에 정상적으로 편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일부 자녀들의 경우 대안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지만 정원 확대와 예산 지원 등의 문제 등과 맞물려 충분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에서는 특별히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보다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상담 교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학교 상담 교사들은 해당 이민자들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부모들에게도 접촉하여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 프로그램, 호스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와 지역사회, 해당 학교,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민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언어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는 과도한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경험하면서 이민 허가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단 사회로 편입된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합과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들은 크게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학교는 물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교육우선지역(ZEP)을 설정하여 주로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와 다문화적 정서가 비교적 유사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이 주를 이루며 지자체와 NGO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문화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교육하는 대표적인 학교와 센터 5곳을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교육문제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적·물적 지원의 열악함이다. 일반적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안학교나 비인가교육기관인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교원수급이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도 학교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기가 쉽지 않으며 몇몇의 독지가나 사회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둘째, 학력 신장의 어려움이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은 모국에서 교육받은 수준도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입국하는 연령대도 다양하여 학력에 따라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대개 한국어 교육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학생 각자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개인적 배경의 불안정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동반거주 신분이거나, 경우에 따라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인적 배경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하는데 근본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가정의 불화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교육을 포기한 채 가정에만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2. 제언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다문화교육의 전문가들이 일찍이 그 심각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다문화교육정책이 조속히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국 수준의 일반적인 정책들을 펼치는데 주력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다수를 구성하는 결혼이민자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에 집중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들이나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였다.

사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다른 다문화적 배경의 자녀들에 비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법무부의 통계 자료에 드러난 숫자는 정상적인 비자(F-1)를 발급받은 사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설명 취학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가 많지 않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국가정책이 기본적으로 법률의 적용 한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권리가 없는 외국인에게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엄연히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도 무방한가의 문제가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의 개정과 정부 부처들 간의 협조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인 교육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다문화가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며 접근 가능한 대안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대안학교나 일반학교의 특별학급, 또는 NGO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학생들의 입학 정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나마 기관의 운영도 소수의 교사들과 자발적인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처한 교육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바로 이곳의 운영자와 교사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

점들은 대개 수용인원의 한계, 예산의 부족, 일반학교로의 진학 곤란, 다양한 연령대와 학력수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부족, 가정 환경적 문제 등이다. 이 중 일반학교로의 진학 문제와 가정환경의 문제를 제외한 것들은 결국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배경은 결혼이주가정 자녀들의 특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차이는 국내거주 기간 및 앞으로의 거주기간의 편차가 크다는 점, 입국하는 나이에 따라 사회화의 편차가 크다는 점,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대체로 낮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기존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정책과는 차별성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은 보통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현재 교과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연구되는 다문화관련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룬다. 학교가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은 언어교육, 문화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이 주를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보통의 한국 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들의 대다수는 결혼이주가정의 자녀들이며 보통의 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학령기에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병행되기도 하지만 언어적·문화적 적응이 완료되는 시기 이후에는 보통의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그러나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교육목표와 내용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부모가 추후에 본국으로부터 데려온 경우에는 한국인으로 귀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귀화의 가능성이 적은 외국인노동자 부모가 본국으로부터 데려온 경우에는 몇 년 거주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녀들을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이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교 교육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다른 목표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 핵심은 한국어 교육에 있다 하겠다.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달리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간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제사회화의 어려움을 겪거나, 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불화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자녀들이 많다. 상담전문가의 육성 등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학력차이를 통한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디딤돌반과 무학년제의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학년선택과 개별적인 교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주로 영어에 집중된 이중언어교육의 폭을 확장시켜 학생들의 출신국에 맞는 다양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원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한국의 일반가정 학생들과 함께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이 외국인으로서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상담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일반 한국인 학생들과 연계한 예·체능 수업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화하고 다양하게 편성함으로써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한국의 일반가정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NGO와 민간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루트를 다양화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과 학교가 전담하는 나라는 드물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중언어에 대한 언어교육과 생활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방정부와 NGO, 학교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지원 역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행의 학교 중심적 다문화교육으로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 교육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의 경우 공식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보다 이중언어 전문 교육기관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국내에 이중언어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할 만한 곳이 아직 없지만, 장차 다문화사회의 이행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전문기관의 설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주 초기단계의 교육을 이수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향후 거주 계획에 따라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국으로 돌아갈 학생들의 경우 기본적인 적용교육(한국어교육, 문화교육)과 함께 본국의 학령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는 교류 사업을 통해 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인으로 귀화하거나 한국에서 장기간 살게 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적용교육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 학교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 고려해볼만한 것이 거점형 학교이다. 현재 일반 학교에서도 특별학급을 통해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인원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거점형 학교의 형태와 수준은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일반 학교 내에 학급의 형태로 둘 수 있고, 거점학교 자체를 이중언어 교육기관과 일반학교의 중간 단계로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중언어 교육기관에서 초기 적용교육을 전담하고, 거점학교에서는 학생이 일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선행단계

의 교육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진로지도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체계적인 연계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나 위탁학교의 경우에도 중등학교인 경우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업학교나 전문계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같은 외국의 경우 많은 이중언어 자녀들이 실제로 일찍 전문계고교를 통한 기술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기업체들과 체계적인 연계구조가 정착되어 있고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중등학교를 마치게 해서 졸업장을 주든지 졸업학력을 인정해주어야만 이들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다원화된 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 외적 문제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교과부의 정책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부처와 지자체, NGO, 지역센터들과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반·중도입국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사실상 다문화사회로서의 교육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갈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그냥 국민교육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왔더라도 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은 물론 본국의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적 교육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몇 년에 불과한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당장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문제는 서서히 우리도 그러한 교육 역량을 갖춰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정,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03-120.
- 문지영, 2009.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사이에서 :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 오성배, 2010. 인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 이순태, 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 107.
- 이유진, 2009.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 레짐에 대한 연구 :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 Bemak, Fred & Chung, Rita C-Y. (2003), Multicultural Counseling with Immigrant Students in Schools. In: Pedersen, P. & Carey, J. (eds.) *Multicultural Counseling in Schools: A Practical Handbook* Boston : Pearson Education Inc. 84-104.
- Camarota, S. A. (2005). Immigrants a mid-decade: A snapshot of America's foreign-born population.
- Dorais, Michel. (2002). "Immigration and Integration through a Social Cohesion Perspective", Horizon.
- Goldberg, M. E. (1999). Truancy and dropout among Cambodian students : Results from a comprehensive high school. *Social work in Education, 21*(1), 49-63.
- Hertzberg, M. (1998). Having arrived: Dimensions of educational success in a transitional newcomer school. *Anthropology & Educational Quarterly, 29*(4), 391-418.
- Kaprielian-Churchill, I. (1996). Refugees and education in Canadian school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2*(4), 349-365.
- Pedersen, P. B. & Carey, J. C. (eds.) (2003). *Multicultural Counseling in Schools: A Practical Handbook*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Ponterotto, Joseph G. et al. (eds.) (2010). *Handbook of Multicultural Counseling*. 3rd. ed.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Roberts, Suin (2008). Language of migration: guest workers in Germany - teaching diversity and critical think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1. 50-65.
- Short, Ellen L. et al. (2010). Counseling Immigrants and Refugees. In: Ponterotto, Joseph G. et al. (eds.). 201-211.
- Yakushko, O., Watson, M., & Thompson, S. (2008). Stress and coping in the lives of recent immigrants and refugees: Considerations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30*, 167-178.
- Steve Francis-Sarah Cornfoot, (2007). Working with Multicultural Youth : Programs, Strategies and Future Directions. Australian Research Alliance for Children & Youth